



보조사업 감사 업무편람

발 간 등 록 번 호
78-6460000-000542-10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보조사업 감사 업무편람

www.jeonnam.go.kr


전라남도



전라남도
JeollaNamdo

발 간 등 록 번 호

78-6460000-000542-10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보조사업 감사 업무편람

www.jeonnam.go.kr



전라남도
JeollaNamdo



보조금(補助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 문화진흥, 산업진흥, 사회복지, 재해복구 등 공익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단체·개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반대급부 없는 재정지원이라는 점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으나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일부 국민들은 아직도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부정수급을 범죄가 아닌 잘못된 관행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도에 보조금 감사팀을 설치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상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0년부터는 「공공재정환수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보조금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제작한 「보조사업 감사 업무편람」은 자치단체의 현장 업무 담당자에게 보조금 사업의 업무기준을 제시하여 보조금 사업의 반복적인 지적 사항을 시정·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수행, 실적보고와 정산검사, 중요재산의 관리 방법 등 과정별 주요사항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보조사업 감사 업무편람」이 보조사업 수행의 지침서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넘어 보조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모든 법규와 업무지침(규정)은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감사사례는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I. 지방보조금 성격	1
II. 보조금 관련 법 규정	7
1. 보조금 공통 법 규정	9
2. 분야별 규정	10
3. 보조금 감사의 법적 근거	12
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개념 및 유형	13
III. 보조사업 추진 단계별 유의사항	19
1.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	23
2. 보조금 교부신청 단계	24
3. 보조금 교부결정 단계	25
4. 보조사업 집행 단계	25
5.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27
IV. 보조사업 감사 사례	29
1. 사회복지·보건분야	31
2. 농업·축산·어업분야	61
3. 산림·환경분야	93
4. 문화·예술분야	113

V. 부록: 보조금 관련 법 규정	131
① 지방재정법	133
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안부 예규)	141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9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기재부 공고)	193
②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기재부 공고)	203
③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 (기재부 행정지침)	207
③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29
④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44

제1장

지방보조금 성격



지방보조금 성격

1 지방보조금의 개념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 *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 (자체보조사업) 국고보조금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하는 사업

2 지방보조금 분류

-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 민간보조: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 경상보조: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 자본보조: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3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지자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 치안, 교육 등의 국가사무 경비지원 금지
 - ▶ 민간단체 보조금 신청 시 사업 내용 검토 필요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금지
 -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만 지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편성
 - 보조금 과목별, 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사업 유형별, 자원 분담 기준 등 심사
 - 보조금 소관 부서 1차 검토 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4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조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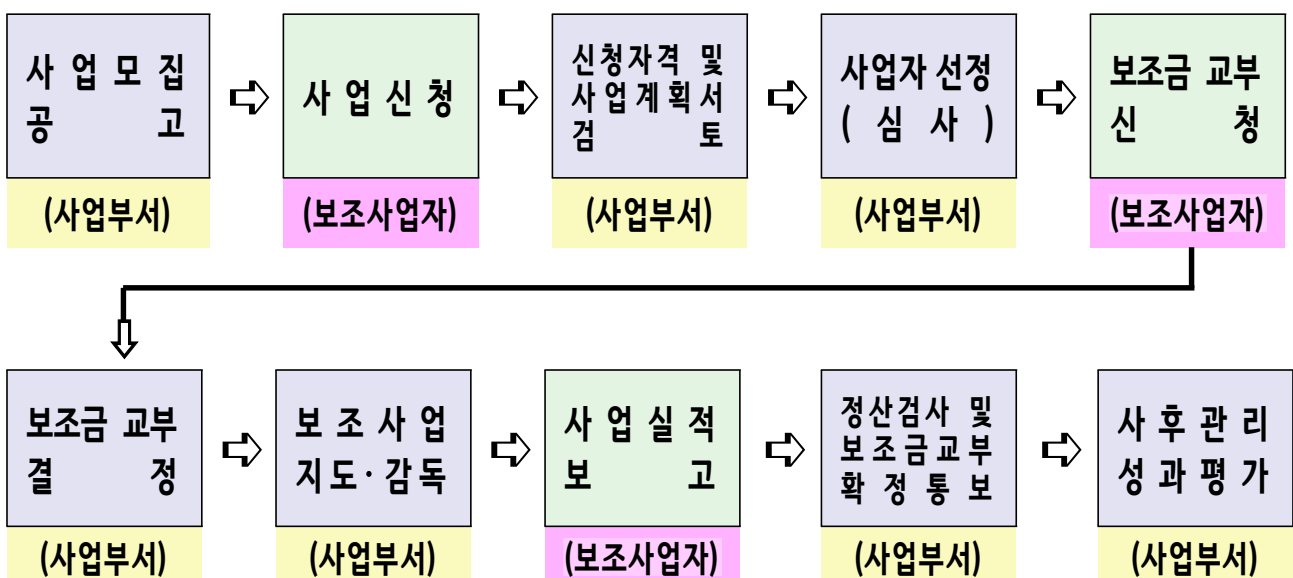
‘조례 직접 규정’이란 해당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정 (예시 「경로당 운영조례」에 경로당 방역소독사업으로 명시)

- 도가 정책상 또는 시·군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에 지원하는 경우

5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하는 행사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 금지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6 보조사업 업무추진 흐름도



제2장

보조금 관련 법 규정



보조금 관련 법 규정

1 보조금 공통 법 규정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 보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절한 관리 도모
-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전라남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
 - (시·군 조례)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보조사업자 선정, 예산편성, 보조금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보조금 공통 법 규정>

소관부처	관련법규	해당 법률과 규정의 내용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국가·지자체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국고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의 부정이익 환수 규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 통합관리지침,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포함
정부부처	보조·지원사업 법률 ...관리규정·사업지침	분야별 보조와 지원사업의 정책목표, 재정사업 관리(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 세부사항 규정
전라남도 시·군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 방법, 보조금 사용과 사업공개 사항을 규정

2 분야별 규정

○ 분야: 사회복지, 보건, 농어업, 산림, 환경, 관광, 문화

○ 각 분야별 보조금 관련 법 규정

분야	대상별	주요 보조사업명	법 규 정			
			법 률	행정규칙	자치법규	기타지침
사회 복지	민간 보조	- 자활사업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 어린이집운영 지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회복지사업법 - 아동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도, 시·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도, 시·군 보육지원 조례	보건복지부 사업별 사업 안내
	공공 단체 보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지급 - 기초연금 지급 - 장애인 연금 지급 -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회복지사업법 - 기초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도, 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 시·군 아동복지지원 조례 등	
	민간 * 공공 단체	-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 아동양육 수당지급 - 드림스타트 운영 - 결식아동 급식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 아동복지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	공공 단체 보조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암 관리법 - 긴급복지법 - 모자보건법			
농업	민간 보조	-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 - 향토산업 육성 - 농식품 제조 가공 등	-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촌정비법 - 축산법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연도별 사업지침
	공공 단체 보조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 종자산업 기반구축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APC)지원 - 거점소독·세척시설 지원 -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 - 구제역 백신 지원 등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축산물 위생 관리법 - 축산법 - 종자 산업법 등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분야	대상별	주요 보조사업명	법 규 정			
			법 률	행정규칙	자치법규	기타지침
해양 수산	민간 보조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 어촌자원복합 산업화 - 친환경에너지 보급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천일염 산업육성 등	- 수산업법, 수산종자 산업 육성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 식품산업진흥법 - 소금산업진흥법 등	해수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연도별 사업지침
	공공 단체 보조	- 어업기반 정비 - 수산자원 조성 - 일반농산어촌 개발 등	- 농어촌정비법 -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어촌·어항법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축산	민간 보조	-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 동물 복지형 녹색 축산 농장 육성 -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 가축분뇨 처리 지원 등	- 축산법, 낙농진흥법 - 사료관리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연도별 사업지침
	공공 단체 보조	- 유기 동물 보호 센터 운영비 지원 - 말산업 육성 지원 등	- 유기동물보호법 - 말산업육성법 등			
산림	민간 보조	- 산림소득기반조성 - 목재펠릿보일러보급 -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 단체참여사업	-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 관한법률	- 농림축산식품 분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산림사업종합 자금운용규정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	연도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 지침서
	공공 단체 보조	- 조림, 숲가꾸기, 가로수 도시숲, 임도·사방 사업 - 수목원 및 박물관 산림복지시설조성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법	-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지침 -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연도별 사업지침
환경	민간 보조	-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 -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연도별 사업지침

분야	대상별	주요 보조사업명	법 규 정			
			법 률	행정규칙	자치법규	기타지침
환경	공공 단체 보조	• 환경기초시설 설치 • 생태하천복원사업 • 양질의 상수원 확보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등	•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 자연환경보전법 • 하수도법 • 물환경보전법 등			
관광	민간 보조	•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 법인·단체 등에 민간 이전 사업 다수	• 관광진흥법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 전라남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공공 단체 보조	• 지역축제, 관광 기반 시설 조성 등	• 관광기본법 • 관광진흥법 등			
문화	민간 보조	• 법인·단체 등에 민간 이전사업 다수				
	공공 단체 보조	• 문화기반시설건립 • 공연예술활성화 • 문화유산 보존 관리 등	• 지역문화진흥법 •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산업진흥법 등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 병행규정

3 보조금 감사의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3조제3호

- (특정감사)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단체의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

-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전라남도 감사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개념 및 유형

□ 부정수급의 개념

- (정의) ‘부정수급’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함(통합관리지침 3조)

[보조사업자] (법 30조①)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간접보조사업자] (법 30조②)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수령자] (법 33조①)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환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위 조항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 등에게 보조금 교부 취소 및 반환 명령을 할 경우, 그 위반행위는 제재처분이 필요한 ‘협의를 부정수급’에 해당
- 다만, 반환사유가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면서 그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수령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광의의 부정수급’으로 분류 가능

* 시행령 별표5(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 위반행위가 제재가 필요한 협의의 부정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안별로 판단하여 결정

※ 협의의 부정수급과 광의의 부정수급

- (협의의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보조금 반환 및 제재처분이 필요한 경우
 -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에 근거한 교부취소 및 반환명령의 경우가 해당
 - 다만, 반환사유가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면서 그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광의의 부정수급'으로 분류 가능
 - 「보조금법」 제35조 제4항 중요재산과 관련한 반환명령의 경우 협의의 부정수급에는 포함되나, 제재부가금·수행배제 등의 제제는 불가
 - (광의의 부정수급)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어 환수가 필요하나, 그 책임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묻기 곤란하여 보조금 반환 외의 제재를 할 수 없거나 제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법」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교부조건), 법 제21조 및 시행령 9조(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법 제28조 및 제31조제2항(금액확정 후 초과액 반환)에 근거한 교부취소 및 반환명령의 경우가 해당
 - 위 조항에 근거하여 교부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보조금 편취의 의도가 존재하며 법 제30조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에 근거한 취소·반환명령 및 제재처분 필요
- * (예시)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금의 금액 확정 후 발견된 초과액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 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취소, 제재처분 필요
/초과액이 단순 행정오류에 의한 경우 → 법 제31조제2항에 근거한 환수, 제재처분 불가

판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함 (대법원 2014.10.30. 2013두1980 판결, 대법원 2013.6.13. 2011두7175 판결, 대법원 2009.6.11. 2009두4272 판결, 대법원 2006.10.27. 2004두6105 판결)

관련 법령

보조금법 및 시행령, 지침

- **법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지침 제16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시행령 제9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법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부정수급의 유형

※ 부정수급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어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아래는 대표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부정수급 유형 제시

○ 주요 빈발 유형

구 분		내 용
허위 신청	허위 인력	근로자, 원생, 가족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나 등원하지 않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소득·재산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보조금 허위 신청 (소득·재산 미신고, 축소신고)
	기타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허위 서류 작성 등 보조금 허위 신청
허위 출결		근로시간, 훈련시간, 보육시간 등 출석일수 허위신고, 대리출석 등 보조금 지급요건에 출결이 포함되는 경우의 허위 출결
가격 부풀리기		공사비, 장비 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과다 수령
자부담 회피·대납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한 뒤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을(정당한보조금+자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수령
바우처카드 허위 결제		바우처 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 결제, 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과다 청구, 해외출국자 결제 등
목적 외 사용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중요재산 임의처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처분 (임대, 양도, 담보 등)
기타 (협회의 부정수급)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협회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광의의 부정수급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행정 담당자의 실수 등 행정상 착오로 인한 보조금 착오지급
	행정시차	보조금 수급 자격요건 등의 변동 정보가 행정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인 보조금 착오지급
	사정변경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기타	그 외 보조사업자 등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부적정 지급

○ 단계별 유형

구 분	사 례
선정	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의 선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허위 신청, 중복 선정, 선정업무 담당자와 선정 대상자의 결탁 등)
집행	보조금 교부 뒤 해당 보조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허위 출결, 목적 외 사용 등)
사후관리	보조사업 종료 및 보조금 집행이 완료된 후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중요재산 임의처분 등)

○ 보조금법상 유형

구 분	내 용
허위수급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다른 용도 사용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법령등 위반 및 요건 미충족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요재산 임의처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되거나 효용이 증가한 재산을 무단으로 사후 처분한 경우 * 다만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명령만 가능하고, 제재부가금·수행배제 등의 제재처분은 불가
광의의 부정수급	보조사업자의 책임없는 사후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한 환수, 정산 결과 발견된 초과액 환수 등이 필요한 경우 * 다만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명령만 가능하고, 제재부가금·수행배제 등의 제재처분은 불가

○ 행위주체별 유형

구 분	사 례
공무원	부패, 태만, 부적정한 재량행위, 담당자 착오, 행정시스템 오류/미비 등
보조사업자	허위신청 및 수급, 중복신청 및 수급, 사업비 부풀리기 및 자부담회피, 목적 외 사용, 인력 허위 등재, 지출내역 중복증빙, 사업 쪼개기, 무단담보, 무단임대 등
보조금수령자	허위신청 및 수급, 중복신청 및 수급, 수급자격자 명의도용·대여 등
제3자	자부담 대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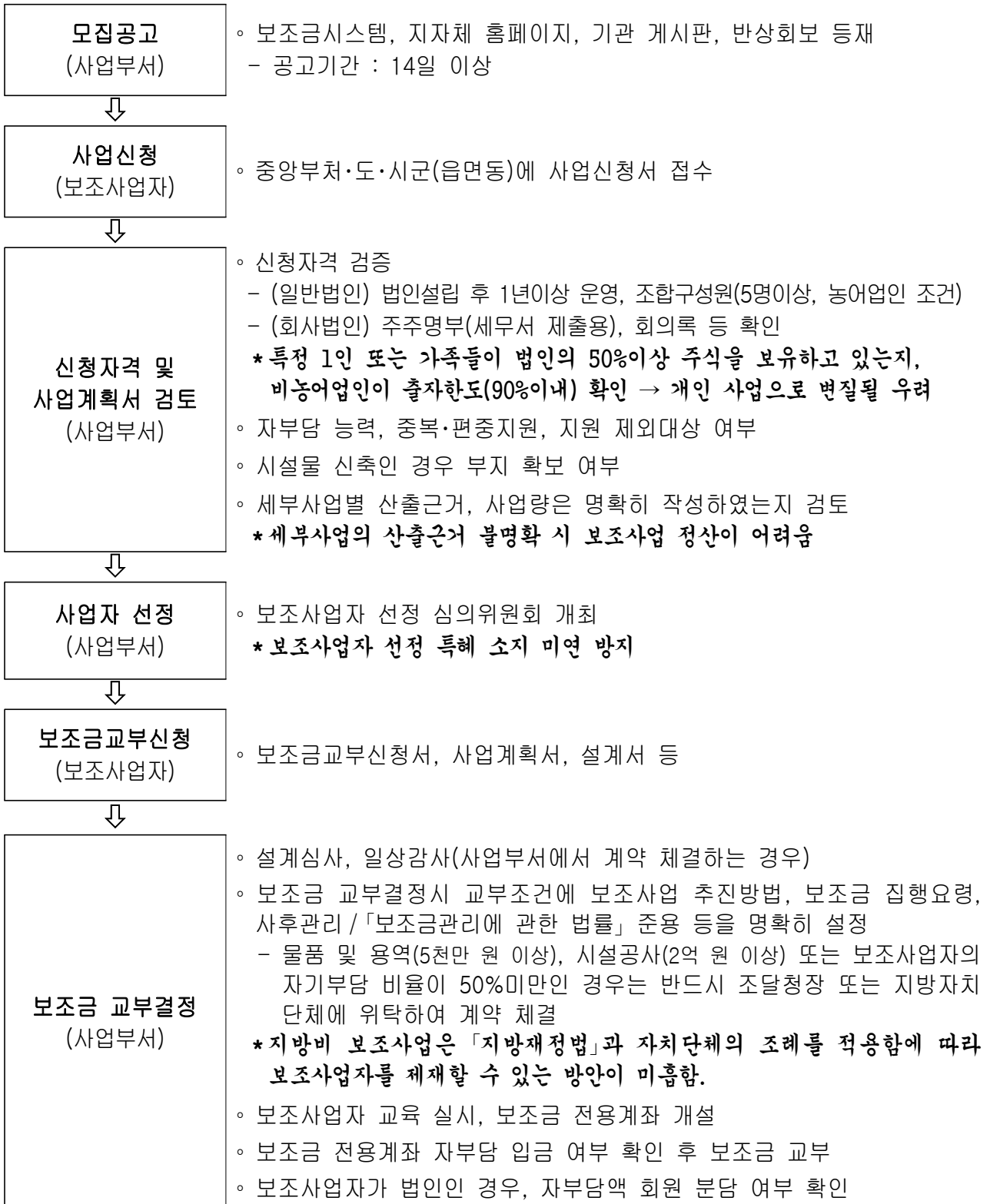
제3장

보조사업 추진 단계별 유의사항



보조사업 추진 단계별 유의사항

□ 보조사업 추진과정





보조사업 추진
(사업부서·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추진율에 따라 현장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업추진
 - * 수익계약으로 사업단가 부풀기기 및 분할발주 주의**
- 사업비는 보조사업 전용 신용(체크)카드로만 집행(자부담 우선 집행)
 - * 전자세금계산서 발부 조건으로 계좌이체 가능**
-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 * 간이영수증 정산 불인정**
- 건축물인 경우 건축 준공 후 부동산 등기(부기등기)



보조사업 지도·감독
(사업부서)

- 보조사업 내용 및 사업비 변경 등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필요
- 보조사업 현장 확인(전·중·후 사진 첨부)
 - * 사진촬영 시 기준점을 두고 사업 전·중·후 촬영**



사업실적보고
(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전용계좌 금융거래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하자보증보험



**정산검사
보조금 확정**
(사업부서)

- 보조금 집행 잔액, 이자 등 반납 조치
 - 보조금 전용계좌 금융거래 명세서를 보고 보조금 집행 잔액과 보조금 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등을 확인하여 재원비율에 따라 반납 조치
 - 농어업인, 영농(어)법인 등이 보조 사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계·장비 등을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원비율에 따라 반납 조치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확인
 - 사업계획과 집행비목을 대조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는지 확인
 - 사업비를 현금으로 집행하였는지,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확인
 - 용역, 기계·장비 및 공사 등은 나라장터, 품셈 등을 통해 단가 비교
 - * 필요시 원가심사**



사후관리
(사업부서·보조사업자)

성과평가

- 보조지원 시설물(건축물)은 사후관리기간 만큼 부기등기를 했는지 확인
- 보조지원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 연 1회 이상 사업운영 및 보조지원 시설물 담보 제공여부 확인
 -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현황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사업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 보고하여야 함)**
- 매년 성과평가 실시

1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 (지자체)

《 보조사업 》

○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 국고보조 재원으로 국가가 지정한 사업인지
- 법률 또는 조례에 보조금 지출 근거가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인지

- 행정기관이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것을 보조사업으로 집행한 사례
- 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하여 보조사업으로 선정한 사례

○ 이미 목적을 달성한 사업에 계속 지원

- 장려, 조성 등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사업인지
- 자립 가능한 단체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지

○ 성과가 없는 사업을 계속 보조한 사례

- 목적 달성의 가능성이 없는 보조사업 계속 지원
- 이미 실패한 사업 또는 부실 단체에 계속 보조

○ 불요불급한 사업 선정 사례

- 단체 등의 경상운영비를 관례적으로 장기간으로 보조
- 단순한 친목 사교단체 등에 보조
- 사정변경으로 보조가 필요 없는 사업 계속 보조

○ 보조사업 대상 심의 여부

- 계속 유지가 필요한 보조사업 3년 주기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 긴급을 요하지 아니한 보조사업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례

《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의 적격성 확인

- 보조금 교부 자격 요인의 실제 충족 여부

- 보조사업 수행능력 및 자부담 능력의 실제 보유 여부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 여부
- 수행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정절차의 적정성 확인

- 사업자 선정 시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에 공모 여부
-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자 선정 등 선정절차의 준수 여부

○ 선정담당자의 업무수행 적정여부

- 사업수행 경험이 없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미확보 업체 선정
- 선정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와 결탁 여부 등

2 보조금 교부신청 단계 (보조사업자 → 지자체)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인

-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규정대로 작성하였는지
- 사업의 목적, 내용, 시기, 규모 등이 교부 기준에 적합한지
- 재원조달 계획 및 사업별 세부집행 계획 수립의 적합성
-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한 사업 유무
- 자치단체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는 중복·유사 사업에 해당하는지

○ 보조금 신청 시기의 적정성

- 신청기한은 사업수행 기간을 감안하고 있는지
- 사업 개시 이후 보조금 신청을 신청하였는지

○ 보조금 관리 통장(사본) 등 제출

- 1개 사업 1개 통장 별도 개설
- 예금주명 단체명과 대표자로 표시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통장 사본 제출

○ 보조사업자 청렴 이행서약서 제출 유무 등

3 보조금 교부결정 단계 (지자체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내용 확인

-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재 검토
-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대상 여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상 보조사업자 일치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여부(예금주 법인명의, 단체명)
- 자부담 예치금액 확인 등

○ 보조금 교부조건 부여 여부

- 소요경비 배분 등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 사항
-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의 착수, 수행 방법, 종료에 필요한 사항
- 보조사업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등 정산 사항
- 교부조건 불이행시 제재방법 명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제한 및 관리 사항 등

○ 교부결정 통지 지연

- 현지조사 지연, 과도한 보완 요구를 이유로 지연한 사실 여부
-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누락 없이 통지 여부

4 보조금 집행 단계 (지자체 → 보조사업자)

○ 보조금 사용방법의 준수 여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여부
- 보조금 사업별로 별도 계정 설정 여부

○ 교부목적(용도)의 준수 여부 확인

- 관련 법령(지침) 및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 보조금의 개인 용도 사용 여부

- 보조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 여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보조금 전용카드로 유흥업소 등 사용제한 업종에 사용 여부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 사업단가 책정 적정성 및 물품가격, 표준공사비 등 적정가격 집행 여부
- 집행 증빙서류의 적정성 및 허위·중복 여부
- 인건비 책정 적정성 및 사망자, 휴직인력, 국외출국자 등 허위인력 인건비 지급 여부
- 인건비 지급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 이체 처리 여부
- 사업수행 관련 강사료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확인
- 기타 실제 사업현장과 증빙자료 상 정보의 일치 여부

○ 보조사업 관련 계약 과정의 적정성

- 입찰의무가 있는 사업을 수의계약 체결로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 5천 만 원 이상 물품 및 용역구매, 2억 원 초과 시설공사 공개경쟁입찰
- 하나의 사업을 쪼개어 입찰의무를 회피(특정업체 몰아주기)했는지 여부
- 가족관계에 있는 등 특정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했는지 여부
- 기타 계약체결 절차의 준수 여부

○ 보조금 수급 요건의 충족 여부

-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를 수급자로 선정하였는지
- 해외출국, 교정시설입소, 장기시설입소 등 수급자격 변동으로 복지급여가 중단된 자에게 계속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선정된 보조사업자 외 미 승인된 제3자의 보조금 수급 여부

○ 승인 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 여부

- 사업의 내용을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 부당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실을 알고도 감독기관이 묵인하였는지
- 승인 없이 사업을 중단, 폐지 또는 양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

- 자부담 없이 보조금으로만 사업 수행 여부
 - 자기부담금 실제 집행 여부 및 자부담 대납 여부
 - 자부담 경감을 위해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 여부
- 지정 기간 내에 사업 착수 또는 완료 여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는지
 - 승인 없이 지정기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 기타 교부조건을 위배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
 - 보조금을 융자금 채무변제로 집행하는 등 법령 또는 교부조건 위배 여부

5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 지자체)

- 보조금 정산업무 적정성 확인
 - 보조사업자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시기 준수 여부
 - 보조사업 미 완료하고도 완료된 것처럼 거짓 실적 보고
 - 정산절차 및 검증, 회계감사 여부
 - 재원별 보조금 정산서 및 사업비 집행 세부 내역 확인
 - 보조금 대비 자부담액 적정비율 집행 및 집행잔액 적정비율
 - 집행관련 지출품의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일치 여부
 - 실적보고서 정산검사 및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 여부
- 후원금 관리 및 사용의 적정성
 - 후원금 접수 및 영수증 발급 대장 관리 여부
 - 비지정 후원금 업무추진비, 부채상환, 재산증식, 자산취득비 등 목적 외 사용 여부
 - 후원금 사용결과 정산 보고 및 정보 공개 여부
- 보조금 반환업무의 적정성 확인
 - 보조금 집행잔액, 부당집행액, 발생이자 반환 및 회수명령 조치 이행 여부
 -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하는 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이행 여부

- 집행 잔액 반환 시 보조금과 자부담액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 반환기한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하거나 연장한 사실이 있는지
- 반환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에게 동종의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

○ 환수액 강제징수 조치 여부

- 반환금액 상계처리가 가능한데도 방치한 사실이 있는지
- 지정한 기일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도 재산압류 등 강제 회수조치 이행 여부

○ 처분제한 재산을 임의 처분 여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여부
- 승인 없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처분 여부
- 보조금으로 취득 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여부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 사업자 확정

- 실적보고서를 기간 도과 후에 제출 받아 형식만 갖춘 사실 여부
- 보조금을 기부금이나 판공비와 같이 처리한 것은 없는지 여부

○ 보조금 횡령 등의 위반사항 수사기관 고발 조치 여부

제4장

보조사업 감사 사례

- ◆ 사회복지·보건분야 / 31
- ◆ 농업·축산·어업분야 / 61
- ◆ 산림·환경분야 / 93
- ◆ 문화·예술분야 / 113



사회복지·보건분야

1.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부적정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자) 선정절차 기준 미 준수
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
4. 민간수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공증(公證) 미실시
5.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부적정
6. 장애수당 지급 업무 소홀
7.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 지원
8.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관리 소홀
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소홀
10.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부당 지급
11. 기초연금 급여 지급 관리 소홀
12.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지원 소홀
13.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정산검사 미이행
14. 영유아 보육시설 지도·감독 소홀
15.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16.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관리 소홀
17. 어린이집 예산과목 부적정 편성 및 집행
18. 자활근로사업단 지도·감독 소홀
19. 노인의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20.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소홀
2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관리 소홀
22. 자활센터 매출적립금 사용 등 관리 소홀
23.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소홀
24.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관리 소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르면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 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 가능하며
 - 위탁운영 수탁자는 공개로 모집하고,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 이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는 서면이 아닌 실제 출석을 통해 의결
- 수탁자와 위탁 계약기간은 5년이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갱신 가능함

□ 지적내용

- ★★시는 ★★시공립노인전문요양원을 설치하고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공개모집을 한 결과 ◆◆사회복지법(대표 ○○○)과 ◆◆사회복지법인(대표 ●●●)이 참여
- 그런데 ★★시는 공모에 참여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법인에 비해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2년 12월 ◆◆사회복지법인과 계약기간 5년으로 수탁 계약을 체결
- 또한 계약기간 종료가 임박하자 재공고 및 선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7년 12월 ◆◆사회복지법인과 계약기간 5년으로 재계약을 체결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수탁자 선정 시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 이때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시 재공고를 하거나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하도록 지도
- 또한 지자체 조례 등으로 위탁 계약기간을 별도로 규정할 경우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리·감독

-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 사회복지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자를 모집
 - 다만, 민간어린이집을 기부 채납하거나,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개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 반드시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위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누리집에 공개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시 등 3개 시·군은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15개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13개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사실을 해당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하지 아니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수탁자 선정 시 반드시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하고,
-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시·군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조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탁기관 선정 관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법률 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
- 「★★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과반 수 이상은 민간인으로 위촉하고,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내용

- ★★군은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하면서 ★★군 ◎◎과 과장 등 5명의 내부 공무원을 과다하게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자는 반드시 공개모집 하고, 최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관리 감독
-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를 준수하여 내부 공무원이 과다하게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 기간, 민간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는
 -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체결한 협약내용 등에 대하여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서에 대하여 반드시 공증을 하여 수탁기관이 협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민·형사상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공증이란 준 법률적 행위로 국가나 공공단체와 같은 단체가 직권에 의해 특정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 지적내용

- ◆◆시는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위탁 협약을 2016. 1. 체결하고, 협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지 않아 수탁기관이 협약내용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 한계를 불분명하게 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지자체장은 민간위탁 관련 수탁자를 선정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 수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공증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조치

-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하여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명령을 하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조 사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
- 또한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기자금의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공사비를 지급할 경우 사업진도를 감안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함
- 아울러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시설 공사비를 지급할 경우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착공·준공계 등 공사 진도 상황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보조금 신청 당시 자부담 사업비 32,410천 원을 기부금 승낙서로 갈음하여 제출하였으나 **▣▣**군은 이를 자부담으로 인정하고,
- 보조사업 추진 관련 시공업체 계약 및 착공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보조사업 공정률이 0%임에도 324,104천 원의 보조금 전액을 교부
- 또한 자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결과 당초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에 비해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액이 늘어나 자부담 조성 등의 어려움으로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액을 확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 전 사업 추진률 등을 확인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
- 당초 보조사업 계획대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회계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철저
- 아울러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사업 정지 등의 제재조치 강구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 및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경증장애인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선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4만원(시설입소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10명의 등록 장애인에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적게는 2개월 많게는 28개월 간 5,600천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 「국가재정법」 제96조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금전채권 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미지급 유무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 조사·확인 후 추가 지급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 동일시기에 동일 아동에게 보건복지부의 보육료·양육수당,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보미서비스, 교육부의 유아학비 등이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지적내용

- ▣▣시 등 7개 지자체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중복지원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육료 44건 3,795천 원, 양육수당 77건 12,518천 원, 유아학비 3건 387천 원 총 16,700천 원을 중복 지급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보육료 등의 지원대상자 중 타 사업에서 가정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보미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 동일한 영유아에게 중복하여 지급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확인 후 중복 지급된 금액만큼 환수 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47조 및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등의 규정에 따르면
 - 시장·군수는 보장시설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급여의 전부를 중지하고,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시설생계 급여는 월 급여 지급기준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한 생계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반환하게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시 등 3개 시·군은 ○○양로원 등 12개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의 사망한 달의 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하면서 ◇◇◇ 등 17명에게 시설 생계급여 2,084천 원을 과잉지급 하였는데도
- 과잉 지급한 생계급여 2,084천 원을 확인일(2018. 10. 5.) 기준 평균 240일이 경과하도록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읍·면·동사무소, 마을이장, 화장장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사망자 모니터링
- 행정기관 및 보장시설 등의 착오로 과잉 지급된 시설생계 급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교육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결정된 수급자의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규정
-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4편에 생계·주거급여는 가구별 현금급여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급여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임
- 또한 위 지침 ‘급여소급 지급 편’에는 수급권자가 복지급여 신청을 성실하게 하였음에도 보장기관이 반영을 누락하는 등 그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르면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제공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제를 책임진 사람에게 장제 조치에 필요한 750천 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 지적내용

- ▣▣군 등 5개 시·군은 2016. 12. 이후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205명 중 ◎◎동에 거주하는 정**이 2016. 12. 7.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해 수급자로 결정되었는데도 2017. 3. 18.에 최초 급여를 지급하면서 신청일이 속한 2016. 12.부터 4개월분에 해당하는 1,322천 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개월 666천 원만 지급하는 등 총 48명에게 16,090천 원의 생계급여를 적게 지급
- 반면에 2017. 5. 22.에 사망한 ◇◇동에 사는 이**에게는 사망 신고일 포함한 달 까지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7. 6. 20.에 생계·주거급여 1개월분 360천 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42명에게 5,800천 원을 부당 지급
- 또한 ●●군 등 4개 시·군은 2015. 7. 이후 사망한 247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읍에 사는 김**(2015. 8. 25. 사망) 등 56명의 가족 또는 장례를 책임진 자에게 42,000천 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복지급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면 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 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착오로 급여가 지급되지 못할 경우 소급하여 지급
-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주거실태 등이 변동된 경우 매월 급여 확정 전까지 변동자료를 확인하여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결정하고,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등 대상자 관리 철저
- 또한 기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이 장제급여를 신청 하도록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신청을 통해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9조, 제30조, 제47조에 따르면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고,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착오로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환을 명하도록 조치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와 「주거급여 사업안내」에 따르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수급권은 인정하되 임차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 등 4개 시·군은 주거급여 대상자 25명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는데도 수급자에게 1개월에서 많게는 7개월에 해당하는 총 10,200천 원의 주거급여를 부담하게 지급
- 부담하게 지급한 10,200천 원의 주거급여를 회수하지 아니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주거급여 대상자의 주거실태, 입원상황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1인 단독 주거급여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한 경우 주거급여를 중단하고,
- 과다 지급된 주거급여에 대하여 반환하는 등의 조치 강구

- 「기초연금법」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시장·군수에게 신청 가능하며 시장·군수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최대60일) 이내에 가구별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요건을 확인하여 수급자를 결정하고,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65세 생일 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 지급하도록 규정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급 기준에 따르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후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 된 경우 선정기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연금 지급
- 따라서 시장·군수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이 되었는데도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고, 사망 등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은 반환 하도록 조치

□ 지적내용

- ♣♣시 등 6개 시·군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120명이 신청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 신청일 기준 최소 1개월 최대 7개월분에 해당하는 총 98,324천 원의 기초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 반면 ◇◇시 등 4개 시·군은 사망, 해외출국 등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김** (사망일 2015. 8. 27.) 등 53명에게 사망일이 속한 달 까지만 연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데도 32,500천 원의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지급
- 그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120명에게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생활경제에 불편을 주었고, 수급권이 상실된 사망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연금에 대해서는 환수가 어렵게 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읍면동 업무담당자, 각 마을리장 등 지역사회자원 연계 기초연금을 적극 홍보
-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연금을 지급 하고, 사망자 등 수급권이 상실된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기초연금 환수 등의 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조산, 분만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하여 해산급여를 지급
- 보건복지부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해산급여액은 1인당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는 중복 지원 할 수 없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 ◎◎과는 해산급여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등 5명에게 3,000천 원의 해산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고,
- 2016년부터 2019년 기간 중 ☆☆☆등 3명에게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중복하여 1,800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시장·군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와 해산급여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수급자가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해산급여 포기각서를 작성 하는 등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 행정기관 착오 및 수급자 부당 신청으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환수 조치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2조의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사업 추진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사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지사체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교부조건 준수,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집행 잔액의 발생 여부, 분담비율의 준수, 자금 입출금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산검사를 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반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군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가 제출한 181건의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보조사업자가 당초 교부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였는지 실질적인 정산검사를 하지 않고, 담당자, 담당, 과장이 공람만 하고, 이를 정산검사 한 것으로 같음
- 그 결과 **▣▣**군 노인복지관 등 81개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가 인건비를 법적 근거 없이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노인대학운동을 특정 종교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교회 운영에 사용한 전기료, 정수기 렌탈료 등을 보조금으로 4,800천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나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시·군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단순 공람만으로 종결처리 하지 않도록 유의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3항제2호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르면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분류되며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수당(직무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은 기본급 이외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으로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 할 수 있으며 모든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규정
- 또한 동일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나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겸임 가능
- 그리고 위 재무회계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직책급은 급여의 성격으로 별도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음
 - 직책급은 수당의 성격으로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소득신고 산출대상

□ 지적내용

- ◆◆시 국공립 ◆◆□□□어린이집 등 13개 보육시설은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급하여야 할 81,172천 원의 안전관리수당을 원장에게만 지급하고, 국공립 ★★ 등 3개 시설은 전임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운전을 한 원장에게 6,350천 원의 운전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 ◎◎군은 국공립 ※※ 등 7개 어린이집은 지침 등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원장 경력 불인정에 따른 급여 차액분 보존 형태로 32,549천 원의 원장 경력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소방안전관리는 보육교직원의 기본 의무에 해당하는데도 원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 20,700천 원의 소방안전관리수당을 지급함
- 또한 ◆◆시 64개 어린이집은 월 평균 최대 3,000천 원의 원장 직책급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총 1,402,866천 원을 지급하면서 169,508천 원에 해당하는 사회보험(100,311천 원)과 소득세 등(69,197천 원)을 원천 징수하지 아니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보장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 상시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 보조금 집행 시 지출품의서, 현금영수증, 보조금 전용카드 명세표 등 지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등 정산검사 철저하여
- 법령 및 지침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원장에게만 지급한 각종 부당을 시설 회계로 여입하여 재편성하도록 시정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를 보조하며 그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라고 규정
- 보건복지부 지침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교재·교구비 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는 구입 가능하나 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컴퓨터 등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은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시장·군수는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시 교재·교구비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원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재·교구비로 지원한 예산을 전액 환수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시 6개 어린이집에서 교재·교구비 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없는 카세트, 책꽂이, 교구장 등의 구입비로 보조금 4,800천 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어린이집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미 환수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신발장, 컴퓨터 등 영유아용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보육시설 지도·점검
- 교재·교구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르게 집행한 경우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전액 환수조치

-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9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 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때 국가 및 지자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지침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조금은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에 사용 가능하며 경비 집행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보조금으로는 시설장의 직책보조비, 시설의 월세 등 건물임차료, 차량구입 관련 취·등록세, 자산 취득비 성격의 물품, 각종 단체 및 협회 가입비 또는 회비, 공과금 연체 가산금, 과태료 납부 등으로는 사용 불가

□ 지적내용

- ○○○군 ▲▲지역아동센터 등 7개 센터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직책보조비로 적게는 800천 원 많게는 2,800천 원을, 각종 단체 및 협회 회비로 5,040천 원을 부당하게 집행
- 또한 ◆◆시 ○○지역아동센터 등 15개 센터는 자산취득비로 지출할 수 없는 냉장고, 책상, 의자 등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등 3개 아동센터는 보조금으로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240천 원을 목적 외 사용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시·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 회계규칙」을 준용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아동센터 관리 감독 철저
- 아울러 보조금 정산결과 목적 외 사용한 보조금 반환 조치 이행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와 제15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위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3항제2호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르면 차량비 목으로는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 구입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 차량할부금은 자산취득비 목에서 지출하고, 자동차세, 환경개선비 등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 차량을 구입할 경우 자산취득비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비 등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목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 지적내용

- ●●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원장 ○○○) 등 15개 어린이집에서 2015. 1. 부터 2018. 8. 까지 제세공과금 목에서 38,000천 원의 차량 할부금과 자동차세를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과 다르게 집행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시·군은 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세출 과목에 적합하게 편성·사용하도록 지도·감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6조, 보건복지부 지침 「자활사업안내」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내에 자활근로사업단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으로 구분되며 이 중 시장진입형 및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의 추진기간은 2년까지 허용되고, 최대 사업단구성으로부터 3년까지 허용
- 또한 시장 진입형·사회 서비스형은 매출부진 등의 이유로 중도해체 또는 3년이 경과하도록 자활기업 창업 또는 시장 진입형 사업단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단을 해체하고 그 매출적립금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시·군 자활기금으로 조성하여 다른 자활지원 사업에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시 등 5개 시·군은 ◆◆◆◆ 등 12개 사회서비스 사업단과 ◆◆협동조합 등 7개 시장진입형 사업단이 매출부진, 다음 상위 단계로 미 전환, 자활기업 미 창업 등의 사유로 중도 해체하였으나 사업단이 해체된 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4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자활근로사업단이 보유하고 있는 총 45,709천 원의 매출적립금을 중앙자산키움펀드(31,996천 원)와 시·군 자활기금(13,713천 원)으로 회수하지 않음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자활근로사업단이 기한 내 자활기업 창업 및 시장 진입형 사업단으로 전환하지 못하거나, 매출부진 등으로 중도해체 된 경우 사업단 매출적립금을 환수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70%) 및 자활기금(30%)으로 조성하도록 조치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일반기준”에 시설의 환경개선준비금 또는 운영충당적립금 등은 사용 사유 발생 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저축상품에 가입하도록 규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 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 ☒길에 위치한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동을 위해 운영충당적립금을 적립하면서 저축(예금)상품이 아닌 ☒연금보험무배당 종신행(적립형) 상품에 가입하고,
- ☒ 등 3개 요양원은 환경개선준비금(11,200천 원), 운영충당적립금(12,410천 원)을 저축(예금)상품이 아닌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적립
- ☒시 ☒요양원의 담보비율은 건설원가(감정평가액) 1,345백만 원의 80%에 해당하는 1,076백만 원 이하로 근저당 설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협동조합에 1,163백만 원(86% 이상) 근저당 설정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노인복지시설에서 환경개선준비금 또는 운영충당적립금은 필요 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저축(예금) 상품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 시설설치 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 시 건설 원가의 80% 이하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별도의 통장에 적립·관리하고, 보조금으로 적립된 퇴직적립금 중 근속기간이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적립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2조4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 지적내용

- ☒☒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15개 사회복지시설은 2016년도 근로기간 1년 미만 종사자 13명의 퇴직적립금 16,000천 원을 반납하지 않고 3년 간 시설의 적립금 통장에 보관하고 있으며
- ●●군 ☐☐법인 산하 ◎◎시설은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무자 15명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지출한 퇴직적립금 및 통장이자 등 총 8,462천 원을 2016년까지 반납하지 않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지자체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를 통해 임면 보고 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을 수시 점검·확인하고,
- 사회복지시설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시군에 반납하고,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시설회계로 여입하도록 관리 감독 철저

- 「영유아보육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및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게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
- 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정,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안전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 회의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함

□ 지적내용

- ▣▣군 ○○○어린이집 등 9개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어린이집 등 7개 어린이집은 원장 등 보육교직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설치 운영기준과 다르게 운영
- 또한 ●●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10개 어린이집은 예산·결산 시 반드시 개최하여야 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13개 어린이집은 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아니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모든 어린이집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제외한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고, 회의 결과는 가정통신문 또는 어린이집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지도 감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하여 자활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자활센터의 매출적립금의 사용 원칙에 따르면
 - 매출적립금의 60%까지 '자활기업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출적립금으로 전세자금 및 점포임대료 등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센터 명의로 등록·관리하여야 하고, 현금성 자산(전세자금, 부동산)은 명의전환이 불가하며 자활공동체 폐업 시 100% 자활기금으로 환수하여야 함
 - 또한 매출적립금의 20% 범위 내 에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참여자 및 종사자 공동교육비, 전문가 인건비, 사업단 경영 및 마케팅 개선지원 비용, 자활사업 개발비, 자활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차용예산, 자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하자보수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상비용, 사업단 운영으로 발생하는 각종세금, 점포월임대료, 사업장 개·보수 비용 등으로 사용가능하나, 참여자 회식비, 간식비, 경조사비 등의 간접경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지적내용

- ☆☆군 ☆☆지역자활센터는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자활사업장 창업자금을 지원하면서 명의전환이 불가한 현금성 자산인 ㉠㉠편의점 보증금 45,000천 원을 지출하고 자활기금 대표(●●●) 명의로 등록·관리
- ●●시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차량 '주·정차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0천 원을 집행함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자활센터 매출적립금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할 경우 센터 명의로 등록·관리하고, 매출금적립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활센터 업무연찬 강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 제41조의6, 제41조의7에 따르면
 -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은 공개하고, 후원금 영수증 발급현황, 수입 및 사용 결과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 시장·군수는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3개월 간 공개를 하여야 함 이때 시설도 같은 기간 동안 해당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 하도록 규정
 - 또한 후원금은 그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법인 및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50% 범위에서 간접비로 사용이 가능. 다만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을 금하고 있음
- 시장·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보고·공개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군 ○○○사회복지시설 등 2개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군수는 11개 시설의 장이 제출한 후원금 사용 결과를 기관 누리집에 공개 하지 아니함
- 또한 ○○○읍 ⊕⊕⊕ 등 5개 시설의 장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해당 시설의 게시판과 누리집에 공개 하지 않았는데도 군수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그리고 ▣▣▣시 노인전문요양원 등 3개 시설은 비지정후원금 8,209천 원을 직원 명절 선물구입비와 종사자 본인이 부담하여할 사회보험료 등으로 집행하고, ○○○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2개 시설에서는 직원 식사비용과 직책보조금으로 22회 1,792천 원을 목적 외 사용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후원금을 모집할 경우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수입 및 사용결과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해당기관 누리집과 시설의 게시판 등에 반드시 공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인 조치 강구
- 비지정 후원금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하여 관리·감독 철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 시장·군수는 「장애인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재판정을 실시하여 등록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장애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재판정 기한일 3개월 전에 재판정 안내문을 통보하고,
 - 지정된 기한 내 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재판정 이행을 촉구하고,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미 이행할 경우 장애인 등록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 및 2주간의 의견청취 후 장애인 등록 취소 및 수당 지급 중지

☐ 지적내용

- ◎◎시 등 5개 시·군에서는 장애 재판정 대상자 109명이 재판정 기한을 평균 280일이나 경과하도록 재판정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재판정 이행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사전에 재판정 안내문을 통보하고, 기한 내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판정 이행을 촉구하고,
- 재판정 촉구 기한 내 미 이행시 장애인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조치

농업·축산·어업분야

1.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2. 강소농식품 경쟁력 강화사업 보조금 편취
3.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장 사후관리 소홀
4. FTA 피해보전제도(폐업지원) 추진 부적정
5. 보조금 전용 계좌 미개설 운영
6.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 정산 소홀
7.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
8. 밭농업직불금 지급 부적정
9.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부적정
10. 농지전용(농어업인 주택, 타용도 일시사용) 사후관리 소홀
11.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부적정
12. 농지이용실태 조사 부적정
13. 도로·하천 전용 이후 농지 지목변경 소홀
14. 가축분뇨 액비살포지 관리 소홀 및 지원 부적정
15. 가축분뇨처리(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 추진 소홀
16. 공동방제단 인건비 정산 부적정
17. 조사료 재배지 녹비종자 중복지원 부적정
18. 2018년 FTA 폐업지원금(축산-염소) 부당 지급
19.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소홀
20. 어업허가 효력 상실 어선 관리 소홀
21.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 행정처분 부적정
22. 수산물 가공공장 시설사업 사후관리 등 부적정
23.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24. 수산물 유통시설 손해보험 등 미가입
2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소홀
26. 보조금 지원시설 사후관리 소홀
27.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의 규정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고
- 「식품 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 “자금배정단계”에 보조사업 규모가 2억 원(물품 및 용역구매 등은 5천만 원) 이상인 보조 사업은 조달청 또는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지적내용

- ☒군은 식품 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사업시행지침에서 보조사업 규모가 2억 원 이상이면 전자입찰을 통해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자부담 비율이 50%를 넘었다고 하여 전자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 그 결과 시설·장비 설치 업체의 적합 여부,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관리 감독 소홀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보조사업이 2억 원을(물품 5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을 하여야 한다고 교부 조건에 명시하고
- 보조금으로 지원 조성된 시설·물품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공개하고, 관리책임자 지정,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 사업성 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매년 1회 합동점검을 실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 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 받도록 되어 있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 지적내용

- ■■■군은 시설 및 설비 등 신규투자가 시급한 소규모 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군 ■■■면 ○○길 ***에 있는 ☆☆농장에 보조금 60,000천 원을 지원
 - ■■■군은 2018. 12. 24.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보조금 통장 입출금 내역(금융기관 발행 거래내역서 포함)을 제출 받고도 통장잔액 200천 원의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반납 받지 않고 정산 하였으며
 - 보조사업자는 2017. 12. 1. 장비업체 ☆☆팩 업체를 대상으로 스틱자동포장기, 수위조절 및 배관을 18,000천 원에 계약하였고, 업체가 2018. 4. 1. 기계장비를 납품하자 보조사업자는 2회에 걸쳐 기계·장비 구입대금 17,800천 원을 송금한 후 2018. 6. 27. 위 업체로부터 8,000천 원의 사업비를 되돌려 받았다. 그리고 보조사업자는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되돌려 받은 8,000천 원 입금내역을 편집(삭제)한 입출금거래내역을 ■■■군에 제출하는 등 보조금을 편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1사업 1계좌 원칙에 의거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자부담과 보조금 이외의 자금이 입출금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보조사업 정산검사에서 보조금 잔액 및 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납 조치하고
- 보조사업자로부터 통장 거래내역 제출 시 편집 여부를 확인하여 부정수급 방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의 규정에 따르면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 [별표 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르면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지적내용

- □□군은 2017년 전통식품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 □□면 ◎◎길 ***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보조금 300,000천 원을 지원
 - 위 보조사업자가 ㉠장류 제조를 위한 가공공장(160㎡)를 신축하고도 ㉠장류 제조를 위한 품목제조 보고도 하지 않는 등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보조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보조사업 수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 ㉠장류 자연발효 숙성을 위해 보관장소(동굴)를 확장(L=109m), 굴착(L=50m) 하였는데 보관장소(동굴) 일부를 카페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조치하지 않는 등 보조지원 시설물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 보조사업장 부지가 법인의 소유가 아닌 법인 대표이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도 사업장 부지를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장 부지 소유권 법인 명의 소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 보조사업 중 식품제조가공으로 품목제조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이 완료 된 이후 품목제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 보조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FTA 협정의 이행으로 폐업 지원금을 받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과오 지급된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다시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되어 있고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사후관리’에 시장·군수는 폐업한 농가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통해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재식 여부 등을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 관리카드에 기재하여 5년간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같은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사업(종자대, 비닐대 등 소모성 사업비는 제외)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 다만,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외하고, 경쟁력 제고 사업별 상환의 범위는 보조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9]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 나. 보조금 환수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지적내용

- ㄱㄱ군 ㄴㄴ면 ㄴㄴ로 **** **선은 2016. 7. 28. ㄴㄴ면 ㄴㄴ리 ****번지 3,350㎡ 중 일부 1,650㎡의 블루베리 사업장을 폐업한다는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 ㄱㄱ군은 2016. 9. 29. 원예유통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27,341천 원을 지원
 - 2019. 6. 24. FTA 폐업지원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시설하우스 (1동, 약 550㎡)에서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인 블루베리를 재배 하고 있는 것을 확인

- 𠄎𠄎군은 2016. 6. 30. 블루베리 폐업지원을 받은 𠄎𠄎면 𠄎𠄎길 **8 **민에게 2016 블루베리 6차 산업화 수익모델 개발 사업을 지원
 - 위 사업장에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기준에 따라 2,473천 원의 보조금을 회수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회수하지 않고 2017. 2. 2. 32,808천 원의 보조금을 지급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폐업지원금을 받은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재식 여부 등을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 관리카드에 기재하여 5년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 폐업지원 품목 중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 할 경우 신청자의 재배 이력을 확인 또는 해당 부서로부터 폐업지원대상자 현황을 사전 파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고,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또한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4조 규정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사업별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보조사업 전용 계좌’라 한다)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사업 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 지적내용

- ☒☒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분야 국비·도비·군비가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협 등 4개 농·축협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각 사업별 보조금 전용계좌에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 ☒☒군은 보조금 전용계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동일 계좌에 2017년 3건, 2018년 6건, 2019년 6건 사업비가 집행되는 등 농·축협 4개 기관에서 제공한 8개의 보조금 통장에 대해 전용계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여 한 개의 통장에 여러 개의 사업비를 지급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1사업 1계좌 원칙에 의거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보조금과 자부담 이외의 자금은 입출금이 되지 않도록 하여 사후 잔액 및 이자에 대해 반납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4조 규정에 따르면
 -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인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농업경영체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교부조건의 이행 여부, 사업추진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만일 실적보고의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지적내용

- ☒시군은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 중 교육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면서
 - 2018년 ☒☒☒☒☒영농조합법인, 2019년 ☒☒☒☒☒영농조합법인이 실시한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사업 정산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 (주)이☒☒☒에서 차량통행 영수증과 식당 카드 영수증을 증거로 ☒☒법인 외 1개소 방문하여 교육컨설팅을 하였다고 제출
 - 차량통행 영수증과 식당 카드 영수증을 보면 ☒☒법인 외 1개소를 방문했다고 확인 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보조사업자가 컨설팅 업체를 선정·계약 체결하면 시장군수는 컨설팅 업체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여부, 수행계획서에 따른 수행일지 작성과 중간 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하는 등 컨설팅 추진 내용이 사실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부실한 완료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하고
- 위 사항에 따른 절차는 농림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참고하여 컨설팅 업체 사업 수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가 필요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 1. 1.부터 2000. 12. 31.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함)로 하며, 다만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약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 같은 법 제6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농사를 짓더라도 농업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지적내용

- ▣▣군 등 19개 시군은 2016~2018년도 쌀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대상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 또는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등에 해당되는지를 지급대상자 선정 시 확인하지 않아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1,643건, 177,595,370원을 부당하게 지급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농지전용과 관련된 지급대상제외 농지를 검증할 수 없으므로, 직불금 지급 전 시·군 개발행위부서와 협조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를 확인 후 지급제외 처리
- 직불금 지급요건은 이행점검 완료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농지전용 시점에 따라 달리 판단
 - 농지전용 시점이 이행점검 완료일 이후라면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 신청농지(지급대상 농지)를 전부 휴경하여 직접 수행할 농작업이 없거나 사실상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이 1천㎡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 받고정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함)로 하며, 다만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약이 의제되는 경우 포함), 국·공유지를 임대차 계약 없이 무단점유한 자,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밭 직불금 신청 농지에 대한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 활용 여부 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조사결과나 실제 재배농지 면적의 합이 1,000㎡ 미만으로 확인된 현장 점검 결과 등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지자체에 전송하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급요건 재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군 등 20개 시군은 2016~2018년도 밭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사업대상 지급 제외 요건 중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이거나 밭농사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등 지급대상자 선정 시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밭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1,680건, 68,856,080원을 부당하게 지급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농지전용과 관련된 지급대상제외 농지를 검증할 수 없으므로, 직불금 지급 전 시·군 개발행위부서와 협조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를 확인 후 지급제외 처리
- 직불금 지급요건은 이행점검 완료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농지전용 시점에 따라 달리 판단
 - 농지전용 시점이 이행점검 완료일 이후라면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 신청농지(지급대상 농지)를 전부 휴경하여 직접 수행할 농작업이 없거나 사실상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이 1천㎡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와 「초지법」에 규정된 초지로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거나 초지로서 관리된 초지인데,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로 거친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지적내용

- ▣▣군 등 12개 시군은 2016~2018년도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하면서 대상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 또는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지급대상 토지 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 등에 해당되는지를 지급대상자 선정 시 확인하지 않아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612건, 15,930,020원을 부당하게 지급
- 쌀 고정직불금·밭 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아 175건, 12,488,140원을 부당하게 지급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농지전용과 관련된 지급대상제외 농지를 검증할 수 없으므로, 직불금 지급 전 시·군 개발행위부서와 협조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를 확인 후 지급제외 처리
- 직불금 지급요건은 이행점검 완료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농지전용 시점에 따라 달리 판단
 - 농지전용 시점이 이행점검 완료일 이후라면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 지급대상자 확정 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대량검증 항목에서 타 직불금과 중복신청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대상자 선정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지법」 제32조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르면
 - 농어업인의 요건을 갖추고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면적을 전용하려는 면적과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보며
 - 부지면적은 농어업인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농지법」 제36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하거나 고발조치 하도록 하고 있다.

□ 지적내용

- 〰〰군은 2017. 6. 29. 준공 된 〰〰군 〰〰면 〰〰로 *** 김〰〰 등 8명이 농어업인 주거 공간을 준공하고도 해당 주택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등 농어업인 주택 사후관리 소홀
- 〰〰군은 〰〰건설이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장사무실로 〰〰면 〰〰리 **번지 등 10개 필지의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하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원상복구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 소홀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농어업인 주택의 경우 매년연초에 허가 대상자 주소 이전 및 실 거주 여부 점검 하여 불가피하게 설치자가 아닌 자에게 매도·임대 또는 상속 사유가 발견될 경우 농업진흥지역·농어업인 여부에 따라 조치하고(농지민원 사례집, 128면 참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기간 만료 이전에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원상복구 이행 통보·현장 확인하고 추가 연장 여부 결정하여 불법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

- 「농지법」 제7조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 있으며
 -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읍장,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읍사무소)는 2018. 7. 16. ㉡시 ㉢구 ㉣㉤로 **번길 ***에 사는 ㉥㉦과 ㉧㉨㉩가 신청한 농지 ㉪㉫시 ㉬㉭읍 ㉮㉯리 **(답, 1,080㎡)에 대하여 각각 신청한 540㎡를 신청한 대로 발급하였으나,
 - 위 2명을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동일세대원(부부)임을, 그리고 새울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면 같은 해 7. 15. 이미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자녀 ㉥㉦의 명의로 540㎡ 발급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합산면적이 1,620㎡로 소유상한 면적을 620㎡를 초과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지 않아야 했는데도 발급하는 등
 - 5개 읍·면사무소에서는 15명에게 소유상한 면적을 적게는 203㎡를, 많게는 1,238㎡를 초과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그 세대원을 확인하고
- 농지원부와 기 발급한 현황을 입력·관리하고 있는 새울시스템을 조회하여 신청면적 또는 신청면적과 세대원 전부의 기 소유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지도·감독

- 「농지법」 제10조부터 제12조, 제55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의 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대상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
 - 처분대상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가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날부터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 있으며,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농지처분명령 유예통보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쌀소득 등 직불금 수령자와 대조 확인한 결과
 - ㉸㉸시 ㉸㉸면 ㉸㉸리 ***-(답, 2,073m²)는 ㉸㉸시 ㉸㉸구 ㉸㉸동 ***번지 *호 ㉸㉸㉸㉸아파트 *동 ***호에 사는 농지소유자 ㉸㉸㉸이 아닌 ㉸㉸면 ㉸㉸*로 ***에 사는 ㉸㉸㉸가 임대 경작하는 등 농지소유자 2명(5필지)이 직접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실제 경작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농지처분을 유예해 줌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휴경, 임대 등으로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농지처분 의무기간(1년)을 정하여 처분할 것을 통지하고, 의무처분 기간 중에 소유자가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
- 농지처분 의무(1년) 기간 동안 경작이나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 통지(6개월 내 처분), 6개월 경과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20%)

- 「농지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부서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지적내용

- 〰〰시는 농지를 이용하여 도로 신설 또는 선형 개선과 하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확장 공사 등 농지를 전용
 - ㉠㉠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5건을 추진하면서 농지 55,072㎡ 전용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등 8건을 추진하면서 농지 60,912㎡ 전용하는 등 총 농지면적 115,984㎡ 전용하여 도로·하천 공사를 완료
 - 준공 이후 60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공부상 농지로 관리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도로·하천 관리 부서는 준공 이전에 공사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안내하여 준공과 동시에 정리될 수 있도록 공부정리 업무에 철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액비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액비 살포 기준은 충분히 부숙 시키고 악취는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농지에 살포하는 경우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양 검정을 통해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시비처방서를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발급 받고 시비량만큼 살포
- 가축분뇨처리사업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에 따르면 액비 살포 전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신고 된 필지에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이후에는 Agrix(가축분뇨 자원화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환경부 소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액비살포비를 지원

□ 지적내용

- ■■■군은 ■■■영농조합법인 외 2개 업체가 2018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651필지, 35,407톤을 살포하면서 살포 대상지에 대해 시비처방서 발급 없이 살포하였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 ■■■군은 액비살포비를 확정하는데 있어 환경부 소관 “전자인계관리시스템”과 Agrix(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시스템에 동시에 등록 된 필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환경부 소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324필지, 97.2ha에 액비살포비를 지원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환경 허가부서) 액비살포업체로부터 액비살포 대상지 접수·변경 허가 승인하고
- (환경 사후부서) 액비살포업체가 액비를 살포 할 경우 시비처방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살포 내역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지도하고
- (축산부서) 액비살포비 확정 전 Agrix(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시스템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등록 된 필지를 확인하여 일치 할 경우만 액비살포비를 지급 하여야 함.(조사료재배단지와 중복 지급 불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5천만 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구매 또는 2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 추진의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지방계약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음

□ 지적내용

- □□시는 2017년 가축분뇨처리(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에 총 사업비 500,000천 원 중 350,000천 원을 지원
 -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계약대행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여
 - 보조사업자가 특정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함으로 인해 국가전자종합시스템을 통해 계약(평균 낙찰률 87.745%)할 때 보다 최소 61,275천 원(추정금액)의 사업비를 절감하지 못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보조사업자가 5천만 원(물품, 용역)·2억 원(시설공사) 이상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자입찰을 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대행 하도록 지도·감독과 업무처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완료 후 그 보조사업에 대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2018년 공동방재단 운영 지원사업 지침」 지원내용에 따르면 인건비는 정액제(1인당 연간 22,589천 원)이며, 축협은 인건비를 분기별로 시·군에 청구하고 시·군은 1인당 보조금 한도 내에서 방역요원 채용 및 운영 실적을 확인하여 지급하며, 축협은 1인당 보조금 한도 내에서 방역요원 채용계약을 체결하되 부득이 보조한도를 초과하여 채용 할 경우 초과분은 축협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지적내용

- ▣▣군은 2018년 공동방재단 운영사업(사업자 ●●축협) 시행하면서 분기별로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검토할 때 개인별 인건비 집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1인당 보조금 한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해야 하나
 - ●●축협이 제출한 4분기 실적보고서에 포함된 개인별 인건비 지출내역을 검토하면서 김●● 등 3명에 대한 4분기(10월~12월) 인건비가 초과지급 되어 1인당 연간 한도액이 초과되었는데도 ▣▣군은 ●●축협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 대로 2018. 12. 27. 정산처리
 - 그 결과 ●●축협에서 자체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 1,763,370원이 보조금으로 지출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공동방재단 인건비 지출 시 개인별 인건비 집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1인당 보조금 한도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며
- 초과 된 금액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자체 부담할 수 있도록 지도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와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 경관보전보조금을 받은 농지는 상호간에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 계획」에 따르면 시·군은 공급받은 녹비작물 종자를 파종하지 않고 방치 또는 외부에 판매하거나 생육 후 조사료로 사용하는 등 사업목적과 다르게 자금이 집행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집행·정산 하도록 되어 있다

□ 지적내용

- ■■■군은 조사료용 종자 및 녹비작물 종자를 지급할 때에는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하고, 녹비작물 지원대상 농가 중 사업목적과 다르게 자금이 집행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집행·정산하여야 하나
 - ■■■군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필지 중 조사료 제조운송비 신청필지에 대해 파종작물 확인을 위해 업무 담당자가 2018. 5. 14.부터 5. 18.까지 5일간 현지 확인한 결과 총 186필지 40ha 중 163필지 29ha에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파종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파종한 작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녹비작물 종자대를 회수하겠다는 의견으로 2018. 5. 23. 출장결과 보고하고도 약 1년 이상이 경과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 조사료용 재배 필지에 중복 지원된 녹비작물 163필지 29ha에 대한 녹비작물 종자대 7,753,550원이 회수되지 않음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조사료용 종자와 녹비작물 종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은 농지는 상호간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대상 필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 녹비작물 지원대상 농가 중 사업목적과 다르게 자금이 집행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집행·정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서(축산)」의 신청자격에 따르면 한·호 FTA 발효(2014. 12. 12.) 이전부터 2017년도까지 염소 사육 규모 기준에 부합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 같은 지침의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에 따르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인지 여부,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사육면적 및 규모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에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지조사 하도록 되어 있고
-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FTA 협정의 이행으로 폐업지원금을 받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나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지적내용

- 시군에서는 한·호 FTA 발효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때에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서류심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자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나
 - ▣▣군은 2018년 FTA 폐업지원금(염소)을 지급하면서 2018. 7. ㉠㉠읍 ㉡㉡㉡길 ㉢㉢-4에 거주하고 있는 정㉣㉣이 작성·신청한 ㉤㉤읍 ㉥㉥리 ㉦㉦㉦6번지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받고 신청서에 첨부된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와 ㉧㉧농장 사료거래명세내역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격 충족요건 확인을 위해 축산행정시스템을 통해 정㉣㉣이 해당 필지에 가축사육업을 2017. 6. 20. 신규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료거래명세표에 2014년부터 거래했다는 기록과 해당 지역 이장, 주민 등의 사실확인서, 토지 소유자인 박㉨㉨과 부부관계 등을 근거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폐업지원금 14,310천 원을 지급

- 전라남도공간정보시스템 및 ‘다음’ 지도 등의 항공영상을 통해 과거의 상황과 최근 2018년 항공사진을 비교한 결과 2016년도 항공사진에는 일반 경작지 형태이고, 2018년도 항공사진에는 염소 사육을 위한 하우스시설과 해당필지 곳곳에 염소 방목 흔적이 보이는 것과 2017. 6. 20.에 가축사육업을 신규 등록한 점을 종합해 볼 때 2014년 1월부터 염소를 사육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폐업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닌 농가에 폐업지원금 14,310천 원이 부당하게 지급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에 따르는 해당 요건 충족 여부 확인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 가축업등록일, 사료 구입 내역 등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협정일 이전 여부를 판단하는 등 부정지급 사례 관리 철저

-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민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 미만인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계약대행 요청을 받아 대행하도록 규정
 -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르면 자율관리어업 대상 (세부)사업이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개별수산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하, “유사사업”이라 한다.)에는 유사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자율관리공동체에 총사업비 180,000천 원, 보조 90%(162,000천 원), 자담 10%(18,000천 원)로 지원
 -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하여 계약대행 요청을 받았으나 계약대행하지 않았음
 - ㉡자율관리공동체가 어장정화사업을 시행하면서 해양수산부 유사사업인 어장 정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르지 않고 사업 대상지 오폐물 조사와 실시설계 없이 자가 시행하였는데도 그대로 묵인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 미만인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르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시군에서 계약대행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없는 내용은 해양수산부 유사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시행 하도록 지도·감독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허가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려는 자는 기존 어선·어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허가받은 어선·어구의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 「어선법」 제19조에 따르면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어선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도록 어선의 소유자에게 최고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수산업법」에 따라 연안복합, 연안자망어업허가 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허가 하면서 기존 어선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기, 수출,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가신청 등의 조치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23척의 어선에 허가처분 하였으나
 - 기존 어선에 대한 조치계획을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는 어선 21척의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 어업허가 효력이 1년 이상 상실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선 소유자에게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 안내 또는 직권 처분 이행하지 않았음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치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치계획 미이행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행정처분하고
- 어업허가 효력이 상실된 어선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 말소 신청할 것을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어선 등록 말소 하도록 지도·감독

-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허가관청에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산업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어업의 제한이나 어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새우조망, 실뱀장어안강망, 패류형망 등 이동성구획어업 허가를 받은자가 해당 허가기관의 관할수역 중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수산업법」에 따른 이동성구획어업(패류형망)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허가구역외의 수역에서 조업한 행위로 적발된 어업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같은 법 제91조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음에도
 - 「수산업법」 검토를 소홀히 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II. 개별기준 2. 가. 31. 1차 위반 ‘어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00천 원’으로 대체 처분 조치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선에 대한 어업의 제한이나 어업정지처분 또는 그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시 위반 어선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가 무엇인지와 위반행위의 유형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처분하도록 지도·감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 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현지조사를 하도록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 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조합법인의 수산물 가공공장 시설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의 정산검사와 사업확정 시 법인에서 구입한 ㉥㉦㉧㉨㉩㉪선별기(138,600천 원) 2대가 법인 가공공장에 설치되지 않고 인접한 ㉫㉬㉭ 조합법인 소유의 가공 공장에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 처리
- ☆☆(주)는 운영자금 확보 명목으로 도지사의 승인 없이 2014년에 보조금 714,000천 원을 지원받아 시설한 수산물가공시설물을 2015. 10. 20. ◎◎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보조사업 완료 후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법령 및 교부결정 내용에 적합한 지 확인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이 잘 관리되도록 연1회 이상 실태조사 이행 하도록 지도·감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6. 6. 21. ○○○○○법에 수산물직매장 시설보조사업 보조금 477,374천 원을 지원하였으나
 - 2017. 3. 29. 직매장을 준공한 이후 한번도 운영실태 점검을 하지 않았고, 보조사업자가 2층 전복전문음식점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 도지사로부터 보조사업장 시설물 사용계획 변경승인도 받지 않고 3층부터 4층 까지 단독주택 증축과 1층 수산물 판매장 시설(243.04㎡) 중 91.89㎡를 차고 시설로 무단 용도변경 하였는데도 그대로 묵인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통하여 법령 및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 또는 보조금 회수 조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물, 선박 등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충청**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관리수탁자는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손해보험 등에 보험료 수령인을 **충청**군수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규정

□ 지적내용

- **충청**군은 2016. 6. 10. 수산물 판매 센터와 **충청** 젓갈 판매 센터를 각각 **충청**영어조합법인과 **충청**조합에 위탁계약하면서
 -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 **충청** 수산물판매센터는 건축비용이 1,393백만 원으로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계약을 하여야 하는데도 265백만원에 해당되는 보험 계약을 하였으며, 보험금 수령인도 “**충청**군수”가 아닌 “**충청**조합장”으로 계약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공유재산(건물)에 대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을 자치단체장 명의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증서 제출받아 관리
- 공유재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중요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표기하여 부기등기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재산처분 제한 기간 동안 중요재산을 처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젓갈산업육성(젓갈처리저장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6. 12. 30. 젓갈처리저장시설을 신축하고 정산서를 제출하였으나
 - ○군은 신축한 젓갈처리저장시설(중요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상 부기 등기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요재산 공시도 하지 않는 등 중요재산관리를 소홀히 함
- ○군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준공 후 운영자금 확보 명목으로 도지사 승인 없이 2014년에 보조금(714,000천 원)을 지원받아 시설한 수산물가공시설물을 2015. 10. 20.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하여 대출 받았음
- ○군은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477,374천 원)을 지원받아 시설 준공 후 당초 사용 목적 대로 수산물 직매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보조금교부결정 시 건축물 준공검사 후 소유권 보존등기상에 부기등기(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임을 표기)하고 정산 시 이를 제출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 보조금 정산 시 부기등기 확인하고 보조금 확정통보 시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2회(6월, 12월) 사업부서에 중요재산변동 현황을 보고 하도록 조건에 명시
- 보조금 확정통보 후 지자체 홈페이지에 중요재산 공시하고, 사업부서는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유관기관 함께 연1회 보조사업 운영실태 점검하도록 지도·감독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수산물 직매장 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아 2016. 6. 21.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신축하였으나 ☐☐군은 보조지원 시설물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지 않았음
 - 수산물직매장 일부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방치됨
- 보조사업자가 수산물판매장 시설(1층)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창고 용도변경 후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보조금교부결정 시 건축물 준공검사 후 소유권보존등기상에 부기등기(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임을 표기) 및 사업계획(사용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 사업부서에서 보조시설물 준공 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연1회 보조사업 운영실태 점검하도록 지도·감독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촉진 지구 내 지역개발사업구역내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 ●●군은 ‘도시민 어촌 장기 체류공간 조성사업 계획’ 등을 수립할 때는 추진 가능 여부 및 건축부지의 행위제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

□ 지적내용

- ☐☐군은 도시민 장기 체류공간 조성을 위해 설계용역 계약과 해당 부지 개발 행위와 산지전용 용역을 위해 10,090천원 집행하였고, 건축 공사 계약과 착공을 함
 - ☐☐군은 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부지의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 하고 관련 부서로부터 협의를 득하여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아 관련부서로부터 개발 촉진지구 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써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라는 회신
 - 사업부지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건축 공사 계약은 취소,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용역비 10,090천 원을 낭비
-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비 총 600,000천 원 중 260,491천 원을 불용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156,294천 원을 반납하지 않음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보조사업을 통해 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이 해당부지에 적합한 용도인지, 행위제한 여부를 관련부서를 통해 사전 확인 절차 이행

산림·환경분야

1. 산림소득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2. 산림소득 사업신청서 검토 소홀
3. 보조사업자 보조금 전용통장 미 개설
4. 사업계획 검토 및 지도·감독 소홀
5.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6. 산림소득사업으로 지원된 중요재산 사후관리 소홀
7. 사방댐 강관비계 등 미 시공분에 대한 보조금 미 환수
8. 숲 가꾸기 등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9.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 산림관리 소홀
10. 산림 벌채허가지 관리 소홀
1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 부적정
12. 공공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추진 부적정
13. 수처리 계측제어설비 발주 부적정
14. “승용차 없는 날” 지방보조금사업 정산 부적정
1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소홀
16.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소홀
17.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통합 관리망을 구축하고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별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제1항 공통 지원요건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 기관의 장이 농업법인 설립요건 등을 구비하였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 공통 지원요건은 보조사업자 선정 당시의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적용

□ 지적내용

- ☐☐시는 2017. 11. ☐☐☐버섯영농조합법인(대표 ☐☐☐, 사실상 대표 ●●●) 으로부터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법인등기부에 명시된 출자금액(170백만 원)을 출자금으로 인정, 420백만 원 교부
 - 보조사업 신청 당시 법인명의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확보되지 않은 부적격 법인으로 확인
 - 또한 조합원 6명 중 4명이 가족 또는 특수 관계, 이사인 ○○○은 서류상의 조합원으로 하는 등 ●●●가 개인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위장법인으로 확인
 - ●●●는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사업 시공업체와 공모하여 사업비를 부풀려 계약, 차액 1억 7,650만 원을 되돌려 받음
- 2017. 3. 농업회사법인 (주)☐☐☐조경(대표 ●●●)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 하면서 시설물 설치 부지의 소유자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지원요건에 충족되지 않은데도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업자 확정 이후 법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받고 법인 명의로 토지가 확보된 것으로 인정, 150백만 원 교부
 - 소유권 이전 미 이행, 조합원 6명 모두 친척관계(비농업인 3명)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농업법인을 산림소득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해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출자금, 자본금, 운영실적 등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감독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지원신청 금액(보조+융자)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임업과 관련된 사업은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
-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제3장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사업자 선정단계”에 따르면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숲가꾸기, 기반조성 등) 지원신청 금액이 500백만 원(보조 400, 자부담 100)으로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 의뢰해야 할 대상이지만 ☒시에서 작성한 심의자료만으로 평가하여 공모사업자로 선정
- 공모 선정된 독립가 ●●●는 경영사정 악화 및 건강이상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 되어 보조금 교부 신청이 늦어져 보조금 100,782천 원 전액이 사고이월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산림소득사업 지원신청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입지여건, 사업능력 등에 관하여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 의뢰하고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도록 지도·감독

- 1)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 등기부등본,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등으로 임업인 확인
- 2)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 3)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 4)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 5)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 6)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 하도록 규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4조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사업별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6. 4. 보조사업자 ●●●에게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80백만 원을 교부하면서 보조금 전용계좌가 아닌 사적 계좌로 보조금 교부
 - 그 결과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사적 금융재산이 섞여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정산하지 못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보조사업자에게 1보조사업 1 계좌 운영하게 하여 보조금 집행명세, 보조금 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하도록 지도·감독과 업무 수행

-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에 따르면 관리사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2015. 10. 보조사업자 ㉢㉣로부터 총 사업비 250백만 원 중 22백만 원으로 농업용 관리사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음
- 2016. 6. 현지확인 결과, 사업장 내에 주거지와 다수의 창고시설 등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관리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관리사가 아닌 “온돌형 찜질방”으로 변경 사용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하여 사업장(산림작물생산단지)이 주거지와 떨어져 있어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관리사는 통상적으로 농업용 장비 보관이나 농작업 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33㎡ 이하)로 설치하도록 지도·감독
- ※ 각 연도별 사업시행지침서를 숙지하여 지원조건, 지원단가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보조사업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
- 「~~○○~~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작목반(대표 ○○○)을 2017년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보조사업자로 선정, 표고버섯 재배시설 현대화를 위해 보조금 240백만 원 교부
 - ~~○○○○~~작목반의 회원 4명은 수목지역에서 보상을 받은 뒤 철거하여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하우스 파이프, 냉·난방기 등의 중고자재를 사용하기로 사전에 공모
 - 보조사업자 ○○○는 시공업체와 공모하여 중고자재를 이용 시공한 뒤 정상 시공한 것처럼 서류조작, 1억 9,217만 원을 되돌려 받음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작성·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세금계산서·입금증·금융거래 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
- 또한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재, 제재부과금 부과하도록 지도·감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할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전 승인 없이 보조금 지원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확인·점검 실시

□ 지적내용

- [군]군은 [대표]가 보조금(560백만 원)이 지원된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를 승인 없이 임의대로 2015. 7. [조합]에 담보(650백만 원) 제공하여 근저당권 설정
- [군]군은 [대표]가 보조금(584백만 원)이 지원된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를 승인 없이 임의대로 2013. 8. [조합]에 담보(120백만 원) 제공하여 근저당권 설정
- [시]는 2015년도 임산물(표고) 유통기반조성 보조사업자 [에게] 8백만 원 지원, 2015. 12. 냉동탑차 신규 등록 후 7개월이 경과한 2016. 7. 임의로 [시스템(주)]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도 인지하지 못함
- [군]은 2016년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보조사업자 [에게] 5.5백만 원 지원, 2016. 10. 냉동탑차 신규 등록 후 9개월이 경과한 2017. 7. 임의로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도 인지하지 못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 제35조의2(중요 재산의 부기등기)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도록 지도·감독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 비닐하우스골조 10±3년, 관정·관수·배수시설 5±2년 등
-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중요재산의 여부에 관계없이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 (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 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랙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 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의거 사방사업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고,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사방사업(사방댐·계류보전) 실시설계 사전심의 검토기준”, “사방사업의 시공감리 업무지침”에 따라 자체 설계심의 후 사방댐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하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7조, 제39조의 등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하고 계약규정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하여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하여 준공대가의 부당하게 지급됨이 발견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의거 부당지급 금액에 대한 보조금 환수하여야 함

☐ 지적내용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사방댐공사(60개소, 9,934백만 원) 실시설계와 달리 사업추진 중에 강관비계 공정을 미 시공한 사업장 8개소에 보조금 35,387천 원을 지급
 - 강관비계 미설치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사방사업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를 시행,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사방사업(사방댐·계류보전) 실시설계 사전심의 검토기준”, “사방사업의 시공감리 업무지침”에 따라 자체 설계심의 후 사방댐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장비 구입 등 안전관리 실태 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 관리하도록 지도·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 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 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

☐ 지적내용

- ●●●군은 (유)●●●개발업체와 2018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60백만 원 외 2건 197백만 원의 사업을 계약 체결하고 추진하면서
 -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자료에 중복 사진 2장을 3개소 사업장에서 중복 제출
 - ●●●기계공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2018년 어린나무가꾸기사업과 2018년 조림지덩굴제거사업에 제출한 내용이 같음
 - 작업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지 않아 물체에 맞는 산재사고가 발생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동일 한 사업자가 지원을 받은 사업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용품 사진 재활용 여부 확인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를 통해 세금계산서 중복 사용 여부 확인 등 관리감독 철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행정동·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산지전용허가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을 제한하도록 규정
- 같은 법 제13조의2에서는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을 신청·신고 할 때 재선충병 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처리를 완료한 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방제방법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
 - 반출금지구역에서 산지전용 등을 허가 할 때는 산림기술자가 작성한 산림조사서에 소나무류 분포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재선충병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방제·처리 여부를 확인

☐ 지적내용

- ▲▲군은 2017. 5. 16. 강●● 외 1명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해 제출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산림조사서에 ●●읍 ●●리 산●-●의 경우 소나무류가 88% 분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지역은 2016. 4. 6.에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재선충병 방제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재선충병 방제·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산지전용을 허가
 - 반출금지구역에서 산지전용을 통해 벌채된 소나무가 방제조치 없이 외부로 반출되어 소나무 재선충병이 타 지역으로 전파 될 수 있는 위험을 조장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산지전용, 일시사용 등의 신청·신고가 있을 때에는 소나무류가 포함된 산지일 경우 재선충병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방제방법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 허가하도록 지도·감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는 벌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고 조림을 하지 아니할 경우 조림명령을 하도록 규정
- 같은 법 제36조 및 제36조의3에 따르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한 내용대로 벌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
 - 입목벌채 허가한 산림에 대해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는지 여부 및 3년 이내에 조림을 하는지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군은 소나무외 3명이 ㉢㉣면 ㉤㉥리 산㉦㉧-㉨㉩번지 외 4필지에 대해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허가 신청에 대해 벌채작업은 허가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벌채 허가한 후 수허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벌채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가 취소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 박㉪㉫가 ㉬㉭면 ㉮㉯리 산㉰㉱-㉲㉳번지 외 1필지의 벌채허가 신청에 대하여 ‘자력 조림은 벌채 후 3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의무 조림 불이행시에는 ㉠㉡군에서 조림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를 하였으나, 벌채 후 3년 3개월이 경과되도록 벌채자가 의무 조림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조림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벌채지에 조림이 되지 않아 경관을 해치고 산사태 등의 재해 위험성을 증대하는 결과를 초래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한 내용대로 벌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필요 조치하고
-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는 벌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벌채지에 조림을 하도록 현지 점검과 필요시 조림명령 하도록 지도·관리

- 「수도법」 제38조에 따르면 수도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도물의 공급 조건에 대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군 수도급수 조례」 제7조와 제8조에 따르면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군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4조와 제7조에 따르면 대행업자 법인의 경우 상주임원 중 시공기술자 3인 이상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신청에 의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4. 3. (유)~~○○~~개발(대표 ~~○○○~~)와 급수공사 대행 계약하였으나 동 업체는 상수도 설비 건설업 면허가 없는 법인사업자이면서 대행업자 지정당시에는 시공기술자 3인(~~○○○~~, ~~○○○~~, ~~○○○~~)을 갖추고 있었으나, 이 중 ~~○○○~~가 2015. 5. 퇴사하여 시공기술자가 부족하여 대행업 자격을 상실하였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대행업 유지
- 2016. 2. 급수공사 대행업을 갱신 할 때에는 위 업체에서 제출한 시공기술자 3인 중 ~~○○○~~은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유한 자로 시공기술자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지정서 교부
- 그 결과 대행업자 자격이 없는 (유)~~○○~~개발(대표 ~~○○○~~) 업체에 2015. 6. 부터 2016. 2. 사이에 급수공사 총 29건 88백만 원을 수주하게 하는 특혜 제공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상수도 급수공사 추진 및 대행업자 지정·관리 시 각 지자체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증서의 교부,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정지, 지정취소 등의 관련 규정 준수토록 지도·감독

-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술진단 결과 악취저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중 적절한 시설의 설치 등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와 제28조에 따르면 대기오염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위착취방지시설을 포함한 집진시설 등이 대기오염방지시설로 되어 있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사업자가 설계·시공하도록 규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환경전문공사를 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이를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공공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 개발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 위 업체에서 제출한 착수계에 첨부된 자격요건을 보면,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대기분야를 제외한 상하수도과 수질분야 등에만 신고가 되어 있어 대기분야나 환경전문공사업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도 이를 살피지 않은 채 소액이라는 이유로 위 업체를 지정하여 수의계약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공공하수처리장 등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사업자가 설계·시공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제2항 [별표 1] “공사의 종류”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수처리(상수·하수 및 폐수 등을 포함한다) 계측제어설비는 정보설비공사이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정보설비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공사는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 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 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와 제11조에 따르면 계장(계측)제어장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4천만 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를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측제어설비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측제어설비는 전기공사와 분리하여 정보설비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마치 전기공사에 필요한 부품을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것처럼 하여 총 14건 3,158백만 원을 관급자재로 발주
-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에 따라 계측 장비 등은 관급자재로 구매하되, 도급자가 구매한 관급자재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공사가 아닌 물품으로 하여 계측제어설비 전체를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등 총 3건 1,255백만 원을 관급자재로 발주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수처리 계측제어설비 공사를 할 때에는 전기공사 등과 분리하여 추진, 계측제어 설비에 필요한 일부 품목(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관급자재로 구매하여 이를 도급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도록 정보설비공사로 발주

-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
- 같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2015 친환경 교통 주간행사’에 대한 총 사업비 6,500천 원(시비 5,000, 자부담 1,500)을 심의한 결과대로 ‘㉸㉸바이크’에게 지방보조금 결정 통보
 - 그러나 ㉸㉸바이크는 자부담 1,500천 원 중 500천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000천 원은 미부담으로 사전 협의도 없이 ㉹㉹㉹과에 보조금 교부신청
 - ㉹㉹㉹과는 사업내용이나 경비의 배분 등의 변경에 대해 당초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유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감액 유무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서 승인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교부조건에 자부담액 500천 원으로 감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부결정
 - 보조사업이 완료되고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80일이 지나서야 실적보고서 제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보조금액 미확정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 및 경비의 배분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및 자부담 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정산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지도·감독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도록 규정
-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7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차량으로 ⑦항에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포함) 체납이 없는 경유자동차’라고 공고

☐ 지적내용

- ●●군은 환경행정시스템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서 차량번호 ♡♡두♡♡♡♡를 조회하면 2018. 10. 02. 전 소유자 ○○○이 환경개선부담금 25,240원을 수납하지 않아 체납차량으로 관리되고 있는데도 조기폐차 지원신청 할 당시의 소유자 ◎◎◎에 대한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총 3대의 체납차량에 대해 보조금 1,220천 원을 지급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신청한 경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를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하도록 지도·감독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1224호, 2016. 7. 1.)」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점검기관은 관할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자체 지도·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도·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기관과 수사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 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 같은 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조업 또는 영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

□ 지적내용

- ●●군은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의 법령을 위반한 32개 사업장 가운데 22개 사업장에 대해 길게는 23일 짧게는 1일이 경과된 후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고
- ●●군은 행정처분을 한 6개소에 대해 처분 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최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6개소에 대해 사후관리를 소홀
 -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위반사업장이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상태가 부실하여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끼칠 우려 발생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환경오염물질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위반사업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2~5일 이내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고
-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확인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개발면적 3만 m² 이상) 등 협력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등을 포함한 인·허가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군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인·허가 처분을 하고, 그 인·허가 내용을 20일 이내에 전라남도에 보고하여 협력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

☐ 지적내용

- ●●군은 2017. 7. 19.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같은 해 12. 8. 착공하였는데도 협력금 52백만 원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면 ■■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53,835m²) 외 1건 부과대상 사업을 전라남도에 보고하지 않아 총 101백만 원의 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음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개발면적이 3만m² 이상이 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인가 등을 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전라남도에 보고하고
- 전라남도가 1개월 이내에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였는지 여부 확인하도록 지도·감독

문화·예술분야

1. 조례 등 지원근거 없는 행사에 보조금 지원
2. 지역 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지급 부적정
3.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4. 행사보조금 교부 및 집행 소홀
5. 문화예술행사 시 주최 명칭 사용 부적정
6. 자부담 입금여부 확인 등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업무 소홀
7. 지역 축제 수익금 세입·세출예산 편성 소홀
8.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등 보조금 정산 소홀
9. 사업계획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사업 정산검사 부적정
10. 축제보조금 집행·정산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11. 체험관 건립사업 추진 등 사후관리 부적정
12. 지역 축제 페스티벌 지원사업 정산 소홀
13. 지역 축제 보조금 정산 소홀
14. 생활체육 육성 보조금 정산 소홀
15. 섬 여행 관광상품 개발용역 결과 이행 소홀
16. 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소홀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때 자비 부담률이 50%미만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대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성탄문화행사와 연등문화축제에 대해 지원근거 조례가 없는데도 ○○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위 행사를 지역민이 화합하는 문화예술행사로 판단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36백만 원 지원
- ○○군은 보조금 교부 시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때 자비 부담률이 50%미만일 경우 군수 등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지 않았음
 - 보조사업자 ○○○는 “성탄트리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설치하여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낙찰률 87.745%) 하였을 때 보다 14백만 원의 보조금 낭비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23조에 따라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보조사업자가 자비 부담률이 50% 미만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이행사항 지도·점검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거나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을 직접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보조금 집행이 아닌 행사 운영비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 ○○○축제추진위원회** 정관에 따르면 위원장과 위원 및 사무국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위원회에서 구성한 축제안에 대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축제 계획을 확정하는 등 사실상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데도 축제경비를 위원회에 민간 행사사업보조금으로 지원
 - 산출근거도 없이 2014. 10. 개막공연 출연료로 ○○○보존회 ○○○에게 3,868천 원을 집행하는 등 2014년 237백만 원, 2015년 199백만 원을 위원회 명의로 집행
 - 법령에 근거가 없는 운영비 성격의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급할 수 없는데도 2014년에 20백만 원, 2015년에 23백만 원의 인건비를 기획·연출료 명분으로 집행
- **○○○축제추진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가 없는 단체로서 위원들을 군수가 임명하는 관 주도형 조직체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민간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는 보조금의 지원 취지에 위배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법령이나 조례에 보조금 지급 규정이 없는 축제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운영비 성격의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조례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하도록 지도·감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세제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정산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등의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승인내용과 다르게 주민들의 편익증진이라는 이유로 총사업비 173백만 원으로 만남의 광장 진입로 253m와 어구 적치장 813㎡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 ~~○○~~군은 “~~□□□~~ 페스티벌 행사”를 위해 ~~○○○○~~추진위원회(위원장 ~~●●●~~)에게 보조금 92백만 원을 교부
 - 보조사업자 ~~●●●~~은 보조금 전용카드를 만들지 않고 개인카드로 결재한 후 영수증을 근거로 현금(계좌이체)으로 지출
 - 보조금 지출 시 행사성 식비와 업무추진비(친목활동비, 활동비 등)의 성격은 지출이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하였으나, ~~○○○○~~추진위원회에서는 식비, 숙박비 등 업무추진비로 4백만 원 지출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보조사업 수행 시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 절차 이행
- 지방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보조 사업비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 보조금 정산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

- 「☒☒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검토하여 교부결정하고 수익이 예상되는 때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 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을 준수하도록 규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제4조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6. 5. ▣▣보존회에서 “2016 ○○○”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375백만 원 중 20백만 원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교부신청, 이때 당시의 보존회 자부담 통장에 잔액이 없어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교부신청 한 다음날 교부 결정 및 송금통보 함
- ▣▣보존회에서는 전라남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채 매년 ○○○을 치루면서 지역 내 업체나 상인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는 관행에 따라 2016. 5. ☼☼☼조합(대표 ●●●)으로부터 현금 500천 원을 ‘후원금’ 명분으로 받는 등 총 7개소로부터 18백만 원의 기부금을 모집
- 2016 ○○○ 행사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향토품물시장”을 운영하면서 ☆☆렌탈(대표 ●●●)과 행사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로 10백만 원을 받아 자부담으로 충당하였는데도 이를 묵인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각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부담금 확보여부를 검토하여 자부담금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결정하고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교부조건 부여
-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 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준수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 국립국어원에서 정리하여 제공한 우리말 바로쓰기에 따르면 ‘주최’는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하여 계획하거나 최종 결정을 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질 때’ 쓰이고, ‘주관’은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집행(실무처리) 할 때’ 쓰이며, ‘후원’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을 매개로 하지 않은 도움을 줄 때’ 쓰인다고 정리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에 불, 폭죽 등 폭발성 물질 사용 시에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관서에서는 (사)■■■■지회에서 보조금 교부요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도가 주최하고 (사)■■■■지회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을 교부결정·교부함에 따라 민간이 기획하고 주도한 행사에 ■■■도 주최명칭 사용을 승인한 결과 발생
- (사)■■■■연합에서 기획하고 추진한 ○○축전의 경우 위 ○○관서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행사를 지원하면서 주최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행사안내 팸플릿 등 홍보물에 ■■■도가 주최하고, 보조사업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표기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타지역 지역 축제 도중 발생한 환풍구 덮개 붕괴사건으로 행사 주최자 명칭 도용,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함을 볼 때 행정의 신뢰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각종 행사의 주최·주관·후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 〰〰〰도는 매년 ●●문화예술재단에 보조금을 교부결정하면서 제시한 교부 조건에 따르면 ‘위 교부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련법령, 〰〰〰도 보조금 관리 조례, 훈령, 지침 등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
- 「〰〰〰도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전에 보조금 전용통장 및 자부담 예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
- 「●●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에 따르면 재단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지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 재단의 지원금 교부조건에는 보조받은 교부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지원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지원금 전용통장에서 관리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문화예술재단에서는 문화예술 육성관련 보조사업 266건 중 52%에 해당하는 139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 신청자가 자부담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
- 그 결과 보조사업 10건의 경우 보조금 전용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에서 자부담금이 집행되어 그 적정 집행여부의 확인이 어렵게 되는 등 보조금이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보조금을 교부하기 이전에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자부담액 예치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를 결정
- 교부된 보조금은 전용통장에서 총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

-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
-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축제를 추진하면서
 - 축제기간 음식부스 등에서 발생하는 입점료 2015년 19,100천 원, 2016년 25,580천 원, 계 44,680천 원을 축제를 주관하지도 않는 축제위원회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지출에 관한 승인 절차도 없이 임차료로 전액을 임의 집행
 - 2015년부터 축제예산을 ○○시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음식부스 임차비로 ☞☞ 기획에 ‘행사운영비’에서 10,800천 원을 집행하였는데 ‘입점료’에서도 7,500천 원, 계 18,300천 원을 집행하는 등 임차비로 총 102,824천 원을 집행하여 견적입찰 대비 12,602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축제·행사 등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등 축제 관련 경비 집행업무 지도 감독 철저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세제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정산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2015년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 보조사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실적보고서 제출, 접수 후 정산 검사 미 실시
 - 실적보고서의 정산서류를 확인한 결과 4건 1,396천 원의 보조금이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에 부적정하게 집행
- ☒☒군은 매년 생활체육 육성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 보조금 전용 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81건 914백만 원을 지급
 -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총 30건 26백만 원,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적합한 것으로 정산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는 “○○○○○○○ 발간사업”을 추진하면서
 -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없었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1,000천 원을 지출하고
 - 보조사업계획에는 원고수합, 교정작업 등에 필요한 회의비로 850천 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발간기념회 대관료로 1,200천 원을 지출하는 등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 승인 없이 당초 보조사업 경비 배분과 다르게 집행하였는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검사 완료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지도·감독하고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정산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2-1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 축제” 운영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면서
 - 보조사업자인 ○○축제위원회에서 2017. 9. 행사 이벤트 회사인 (주)○○○○기획과 행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계산서만을 받은 채 보조금 통장에서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정산
 - 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 없는 등 투명성 훼손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정산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 보조사업 정산검사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 하여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지도·감독

-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관할 중요문화재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기능전수교육 및 재현 등 작품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수회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수회관 관리는 도지사가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나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관서에서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전수회관 설치 취지에 맞지 않게 ○○리 마을회를 민간자본보조 사업자로 선정하여 무형문화재 ●● 전수회관 건립사업 추진
 - 도지사가 설치·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전수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보유자나 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도 민간자본보조로 전수회관 건립
 - 2018. 12. 전수회관이 건립되었으나 ●●장들과의 협의 소홀로 약 2년간 운영 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 그 결과 ●●장의 전통 계승을 위한 전수관 설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전수관 건립 취지에 맞게 직접 설치, 관리·운영하거나 사업추진을 적절히 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의 기능보유자나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 관리
-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철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세제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정산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등의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하도록 되어 있고
 - **△△군**은 제4회 **▽▽▽**의 날 행사 지원사업 및 제23회 우수 **▽▽▽** 선발대회 지원사업 보조금 지출 시 행사성 식비와 업무추진비(친목활동비, 활동비 등)의 성격은 지출이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통보함.

□ 지적내용

- **△△군**은 보조사업자(**▽▽▽**페스티벌추진위원회)가 보조금 전용카드를 만들지 않고 현금(계좌이체)으로만 지출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우수 **▽▽▽** 선발대회 심사원 김**◆◆**이 개인카드로 심사원 단복(양복)을 **◆◆**마트 **◆◆**점에서 170만 원(보조 100, 자부담 70)에 구입하고, 구입 영수증 근거로 심사원 단복 구입 보조금 100만 원을 김**◆◆**에게 지출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
- **△△군**은 보조사업자(**▽▽▽**페스티벌추진위원회)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식비, 숙박비 등 업무추진비로 3,851천 원을 지출하였는데 보조금 회수 등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정산 처리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지방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보조 사업비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

-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
 - ▲▲군은 각 실과로 하여금 ●● ◆◆의 ○○○○ 축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

□ 지적내용

- ▲▲군은 ●● ◆◆의 ○○○○ 축제를 위해 (사)▲▲군관광진흥협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함
 - ▲▲군 실과에서는 축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편성하지 않아 보조사업자인 (사)▲▲군관광진흥협회로부터 축제행사 부스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12개(2015년, 2016년 11개, 2017년 12개) 실과소가 적게는 320천 원부터 많게는 13,850천 원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
- ▲▲군은 ▲▲군방법연합회가 2015년 제◆7회 ●● ◆◆의 ○○○○ 축제장 주정차안내 및 관광객 안전대책 용역을 추진하면서 참여한 대원의 식사 및 간식비 집행 증빙자료로 간이영수증과 보조금 통장 입출금 내역이 상이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간이영수증 및 현금지출, 정산내역 미첨부 등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총 114,527천 원의 정산검사를 소홀히 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축제관련 예산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하고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하도록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르면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조치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5년에 제9회 군수기 **◆◆**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군** 체육회에 8,000천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 전용 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으로 지급하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81건 914,900천 원을 보조금 전용 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으로 지급하였고
- **△△면** 체육회는 제20회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위해 25,000천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15,000천 원의 자부담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6,100천 원은 부담하지 않고 8,900천 원만 부담하여 집행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0건 26,046천 원이 자부담이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산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지급한 보조금에 맞게 자부담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등 보조비율에 맞게 사업 정산 추진하도록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어 있어
 - ▲▲군은 관광상품 개발용역 결과에서 제안한 사항을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지적내용

- ▲▲군은 2017. 12.월에 준공된 관광상품 개발용역에서 제안한 ‘◆◆여행정보 플랫폼 ●●● 구축’ 등 30개 항목에 대해 관광상품을 개발하였으나
 - 개발용역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전출하였다는 사유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및 점검표도 마련하지 않았으며
 - 제안 사항 중 ‘새로운 여행상품 개발 관련 □□조형물 제작’ 등 7개 항목만 개별적으로 추진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연구용역 수립 시 사업 적정성 여부 판단에 대한 철저한 검토
- 연구용역 결과가 완료되면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 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군** **××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수탁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고, 수탁자의 시설 관리·운영 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조례 및 위수탁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리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
- **▲▲군수**와 수탁자(**박○○**)간 체결한 「**××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수탁자는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수탁재산 건물대금 상당액의 손해보험, 근무자 산재보험 및 재정보증보험,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의 이용료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 **▲▲군**은 오토캠핑장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가 해당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설 이용료 징수, 시설의 운영 등이 적정한지를 수시로 지도·점검

☐ 지적내용

- **▲▲군**은 수탁자가 가입대상보험 5종 중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2종의 보험만을 가입, **▲▲군수**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지정 가입
- 캠핑데크(1박2일 사용 시) 사용료를 2016. 7. 7.부터 2018. 4. 30.까지 조례에서 정한 금액(15,000원~30,000원)과 다르게 25,000원~40,000원으로 징수하여 22,350천 원 상당을 초과 징수하고 있는 데도 이를 그대로 두는 등 수탁자의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

☐ 업무처리 시 고려사항

- 조례에 따라 시설관리 운영 상황을 수시 지도 점검하고
- 군 소유 시설물 재산 관리를 위해 협약서에서 정한대로 **▲▲군수**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

제5장 부록: 보조금 관련 법 규정

① 지방재정법 / 133

1-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141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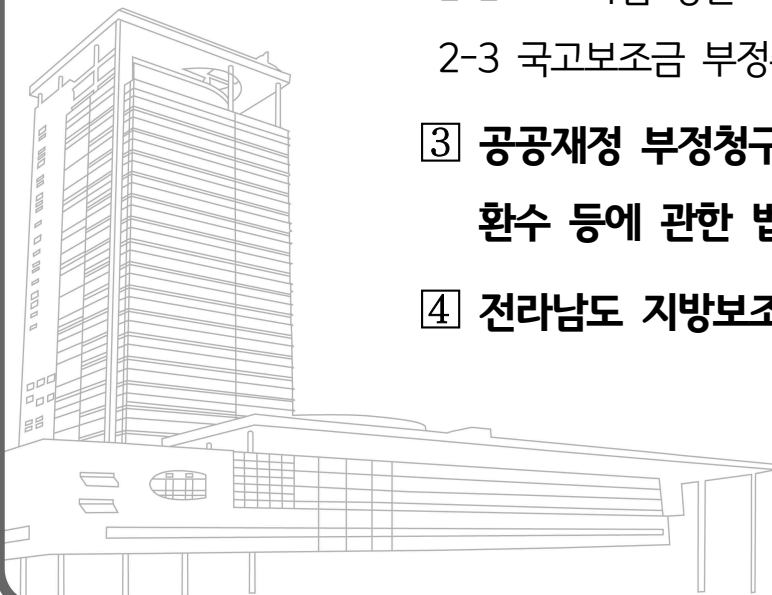
2-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193

2-2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203

2-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 / 207

③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229

④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244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요

① 배 경

- 「지방재정법」(14.5.28.공포) (이하 “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14.11.28.공포) (이하 “령”) 개정에 따라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이하 “예산편성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편성, 운영 관리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

② 큰 거

-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7조의2제3항 및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이력 관리,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용 관리에 대한 기준을 통보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7조의2(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②(생략)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②(생략)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Ⅱ 지방보조금 개요

①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 (분류)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② 지방보조금의 종류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③ 보조금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제32조의11, 제60조, 제60조의2, 제97조, 제98조)

-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교부결정 취소 및 벌칙,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보조금관련 사항 공시 등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7조의6, 제68조)
 -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성과평가 및 관리,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범위 등
- 지방자치단체 조례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Ⅲ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1 예산편성 원칙 (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 * 다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한 포괄적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자원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 가능
- 자치단체장은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② 보조금 지원 대상 (법 제17조, 제23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단,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시·도가 정책상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우

③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96호, '19.7.1.)」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서 국·시(도)비 보조금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 산정기준 : 전년도 보조금 한도 기준액(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 증감율*)

※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한도액 산정에서 제외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사업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총한도액 산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96호, '19.7.1.)」에 따름

④ 지원 제외대상 (예산편성기준)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에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⑤ 지방보조사업의 심의 (법 제32조의2 제3항)

- 심의대상 및 시기
 - 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②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③ 지방의회가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 ④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⑤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⑥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시
 - ※ 국·시(도)비 보조(매칭)사업, 수정예산, 정리추경의 집행잔액 삭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심의 제외 가능
 - ※ 다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 대비 30%이하 증액사업은 리스트에 의한 심의 대체 가능

○ 심의주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15명 이내 구성(공무원은 전체위원의 1/4이하), 임기 3년 이내(1회 연임 가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되, 「지방재정법」상의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심의방법 : 실무검토 → 위원회 심사

- 예산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자원분담 등에 대해 심사 가능

- 해당 사항에 대한 소관(주관)부서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결정

○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경제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분과위원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총괄보고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되 심의 간소화 가능

○ 심의결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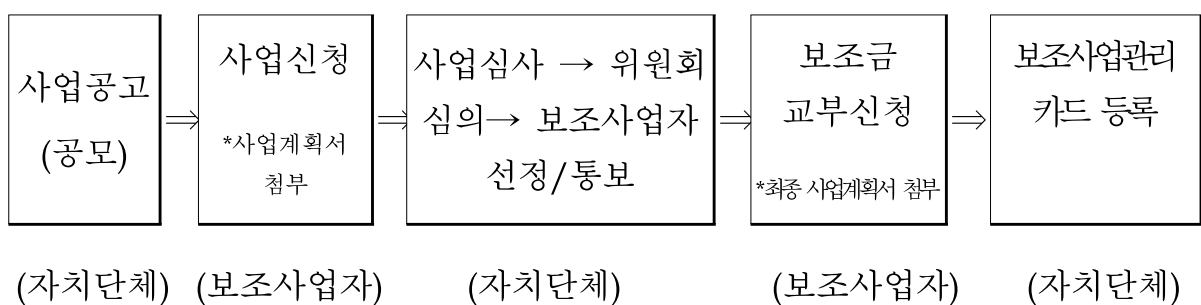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⑥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법 제32조의2, 제32조의7, 영 제37조, 제37조의4)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

IV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①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

< 공모절차 제외(법 제32조의2 제4항) >

1.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 (구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15명 이내 구성(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의 1/4 이내), 임기 3년 이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기능)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공모절차에 따른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Ⅲ-⑤에서와 같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가능

②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법 제32조의2, 영 제37조)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예외 사항 >

-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 가능
-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기존통장 사용 가능
 -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1>'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단, 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는 '국고보조사업'(시·군·구의 경우 '시·도비 보조사업')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 ※ 자치단체장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대상에서 제외 가능
- 다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서 정한 <서식1>을 각 보조사업자 개인별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간편 서식으로 보조사업 내역을 받아야 함
-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1>'를 기초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서식2>'에 등록(사업부서 등록 신청→ 예산부서 등록 승인)하여 3년간 관리
-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2>는 시스템 구축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

< 서식 1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 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서식 2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예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X-X-X-201X-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 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 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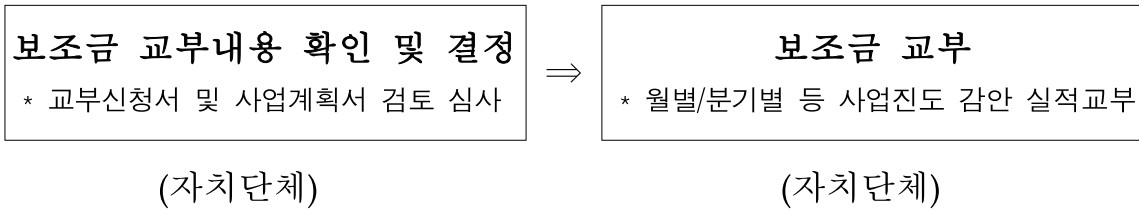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VIII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③ 평가기준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3 지방보조금 교부 (법 제32조의2)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 (보조금 교부전 확인)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 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

○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하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 교부방법

-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함

V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① 지방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 (법 제32조의4)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의 사용한 경우(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②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법 제32조의4)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법 제32조의5)

- 보조사업자의 보고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예시)

-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시설공사비 지급 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4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법 제32조의6,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류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다만,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 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인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허용 가능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 (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31.) 집행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도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 법인·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과목에서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5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법 제32조의2, 제32조의4)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VI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1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법 제32조의6, 영 제37조의3)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서류(예시)

-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②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법 제32조의8)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 사업을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동종(同種)의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③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4]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법 제32조의9, 영 제37조의5, 제37조의6)

○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37조의5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함
< 작성 예시 >

취득 재산명	규격및 모델명	취득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주소

○ 중요재산의 처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의 제공

-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참고)를 감안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처분 가능

5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법 제60조, 제60조의2, 영 제68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 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
- 지방보조사업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름

VII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1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 이의 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함

2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법 제32조의8, 제97조, 제98조, 영 제37조의4)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립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8.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VIII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평가시기 (법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매년)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 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

② 평가대상 (법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민간 보조사업, 자치단체 보조사업
 - ※ 국고 및 시·도비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자치단체의 선택적 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

③ 평가기준 (영 제37조의4)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실시

< 평가 기준 >

분야	운 영 내 용	배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5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5 15 5 -20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40 20

201○년 월 일

□□□ 국장(과장) ○○○ (서명)

-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

④ 성과평가 절차 (영 제37조의4)

- 성과평가 기준 수립(~3월) →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7월) → 다음연도 예산 반영(~11월)

⑤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 (법 제32조의7, 제60조, 영 제37조의4)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 ※ 예) 평가점수 점 미만은 예산 지원 중단
- 대상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총괄하여 공개

IX 시행일 및 적용례 등

① 시행일

- '19. 11. 6.부터 시행

② 적용례

- IV-[2], VI-[3]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교부 결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터 적용

③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년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 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③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5.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6.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7.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9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나.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관련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 및 중복·부정 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보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①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는 자격 검증 등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
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물리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위탁(預託)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되는 보조금의 범위, 구체적인 위탁 방법, 위탁된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5. 「영유아보육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9.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② 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26조의9(운영기관 협의회 설치 등) ①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제26조의8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정책
2.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체계
3.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

③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공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 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 그 특성상 감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정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7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의2(중복수급 확인·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 및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사업자 선정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중복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보조금수령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교, 안보 등 국가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수급 확인·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복수급 검토에서 제외된 내역사업 및 동 내역사업의 모든 하위 상세내역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복수급 확인·점검 시 제외되도록 보조금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수급자격 확인·점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상위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하위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 확인·점검하는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당해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 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교부신청시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 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 사용방법)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 ② 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0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 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⑦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⑧ 제1항, 제5항과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41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3조제3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3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 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 현황을 「보조금법」 제35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의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

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19조 관련)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 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산정기준)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③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예탁금, 지분 취득비, 출자금, 정산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며 별표1과 같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⑤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비목은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한 규정이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규정을 말한다.

⑥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일괄적으로 적절한 보조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사업비카드 발급 받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3.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보조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6.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7.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8.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9.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 보고서 인쇄비, 검증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11.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제6조(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 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2. 보조비목 간의 전용

제7조(수익금 관리 및 반환 기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은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정산보고서의 작성) ①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4.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② 정산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③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사용명세서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신속한 보조금 정산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순보조사업비” 기준의 정산보고서를 우선 제출하고, 하위 보조사업자의 정산이 완료된 후에 이를 총괄하여 “총보조사업비” 기준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제9조(정산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
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중앙
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다수의 보조사업자가 공동으로 보조사업을 수행(컨소시엄 형태)하는
경우에는 주관 보조사업자가 총괄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①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절차

○ 검·경의 수사결과, 감사기관 감사결과, 사업시행기관의 현장점검 등으로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 보조금 교부 취소 및 반환, 제재부가금 등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 공표, 벌금 등 부과(법, 시행령 등)

조치 사항	업무 내용	업무 주체	관련 법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중앙관서의 장(소속 관서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 가능)	법 30조
↓			
보조금 반환 (보조사업자)	◦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 반환 명령	중앙관서의 장(소속 관서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 가능)	법 31조
· 보조금 환수 (보조금수령자)	◦ 보조금수령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법 33조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 반환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체납시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 징수(최대 5%)	중앙관서의 장	법 33조의2
↓			
보조사업 수행 배제	◦ 교부 결정 취소 횟수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앙관서의 장	법 31조의2
↓			
명단 공표	◦ 부정수급자 명단 등을 해당 중앙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	중앙관서의 장	법 36조의2
↓			
강제 징수 (반환금 등 미납시)	◦ 반환금 등 미납자에 압류 등 강제징수 ◦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	중앙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법 33조의3
↓			
신고포상금 (신고 등이 있을시)	◦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중앙관서의 장	법 39조의2

②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법령위반으로 인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법 30조)
 -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 받은 자가 교부 결정의 취소 가능(시행령 17조)
 - 교부결정 취소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여부 등의 결정은 취소 권한자가 사안별로 판단

<전부 또는 일부 취소의 판단기준 사례>

-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 교부 자격이 없던 경우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를 취소
 - 보조금 교부 자격이 있으나 자부담금 대납, 허위영수증 청구 등 보조금 편취가 발생한 경우 → 매칭사업의 경우라도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간주하고 편취 금액만큼 일부취소
 - 보조금 중복신청 → 보조금 교부받은 모든 사업에 대해 전액 취소
-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사업과 무관한 출처에 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일부취소
 -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잔여사후관리기간에 해당하는 보조금만큼 일부취소(산정기준을 재정사업 기본규정 별표로 규정)
- ◇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잔여사후관리기간에 해당하는 보조금만큼 일부취소
 -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의 사후적 미충족시 → 일정기간 내에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내고 미이행 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취소규모는 보조사업 추진정도에 따라 개별 판단

○ (사전통지) 교부결정 취소권자는 교부결정 취소 전 해당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를 해야 함(절차법 21조①)

- 해당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 취소 전 의견제출기간*동안 의견제출 가능(절차법 27조①)

* 보조금법상 정해진 규정은 없으며, 각 중앙관서가 자율 설정

※ 반환명령·제재부가금, 수행배제의 사전 의견제출기간 : 15일

- 의견제출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고한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절차법 27조④)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교부결정 취소 통보) 교부결정 취소시에는 취소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지자체 장인 경우 기재부, 행안부 장관에게도 통보 (법 19조, 30조③)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 (이의신청)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 취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 의견조회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37조)

③ 보조금 반환

- (반환 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결정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 교부된 보조금과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해야 함(법 31조)
 -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보조금 등의 반환 명령(시행령 17조)
 - 이자 계산 시 기산일부터 반환명령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산정

<이자 계산 시 기산일의 기준>

- 보조금을 수급받기 전 신청 단계에서 부정행위 발생
→ 보조금 교부일자
- 보조금을 수급받은 후 집행 등 중간 단계에서 부정행위 발생
→ 부정행위의 발생일자

* 반환명령 전 수사기간이 포함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제외하지 않음

- (보조금 환수) 중앙관서의 장 등은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해야 함(법 33조)

* 전부 또는 일부의 판단기준은 교부결정 취소 시 판단기준과 유사

<보조금 반환액 결정 사례>

- 국비 20%, 지방비 20% 보조사업의 경우

(단위 : 천 원)

교부결정액		실제 사업소요 비용		부정수급액	국비 반환액	지방비 반환액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12,000	18,000	6,000	9,000	6,000	3,000	3,000

⇒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총 부정수급액 중 반환액 결정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법 33조③)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법 33조④)

<부처 자체 지침을 통한 보조금 지급 제한 사례>

◇ 부정수급으로 인해 반환할 금액에 따라 일정기한 동안 지원 제한

1.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때 : 5년
2.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때 : 4년
3.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때 : 3년
4.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때 : 2년
5. 부정수급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때 : 1년

- (사전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를 주어야 함(지침 41조③)
 - * 통지받은 것을 확인한 후 15일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예고한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절차법 27조④)
- (절차 일시정지) 재판결과 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지침 41조④)
 - 부정수급 위반행위가 불명확할 경우 또는 부정수급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등
 - 재판의 결과 등에 따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절차를 재개
- (반환명령 통지) 반환명령 또는 환수조치 시에는 반환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의 내용을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 보조사업자 등은 반환 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 의견조회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37조)
- (반환명령 사실 통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수령자에게 반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시행령 14조)
 - 반환명령 사실 통보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1.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함)
2. 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반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반환기한의 연장)**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명령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반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법 31조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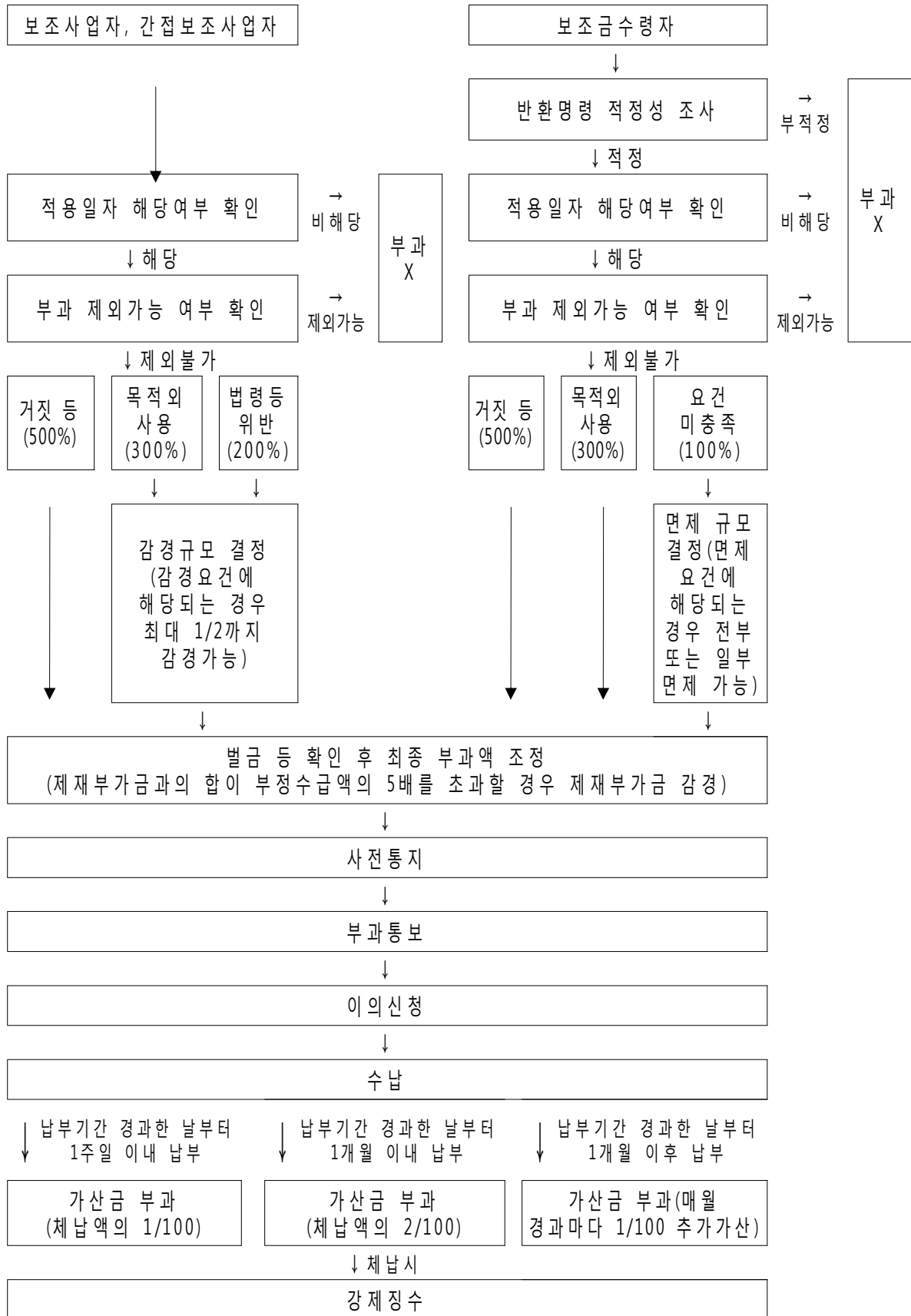
-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사항, 보조금 반환이 곤란한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신청을 해야 함(시행령 13조②③)

○ **(반환 미이행)**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미반환시에는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미반환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음(법 32조)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미납된 반환금에 대해 강제징수 할 수 있음(법 33조의3)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강제징수 : 중앙관서의 장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강제징수 :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의 장

4 제재부가금



- (부과규모)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에게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법 33조의2, 시행령 14조의2)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보조금 반환 보조사업자 (법33조2 1항1호 사유 해당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보조금 반환 간접 보조사업자 (법33조2 1항1호 사유 해당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보조금 반환 보조금 수령자 (법33조2 1항2호 사유 해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경감) 위반 행위가 경미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은 등의 경우 제재부가금 경감 가능(시행령 별표5)

1.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2.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3.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제재부가금의 감경 가능

- 위반행위의 경미성 또는 비고의성의 판단 및 감경 규모는 사안에 따라 부과권자가 판단

*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감경 등 심의 가능

- 보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과 벌금 등의 합계액이 반환 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시행령 14조의2③)

○ **(반환명령의 적정성 조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 하여야 함(법 33조의2②)

○ **(부과 제외)** 아래의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법 33조의2③, 시행령 14조의2④)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전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 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를 주어야 함(지침 41조③)

* 통지받은 것을 확인한 후 15일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예고한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절차법 27조④)

- **(절차 일시정지)** 재판결과 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지침 41조④)
 - 부정수급 위반행위가 불명확할 경우 또는 부정수급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등
 - 재판의 결과 등에 따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절차를 재개
- **(제재부가금 부과 통보)** 중앙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 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시행령 14조의2⑤)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지침 41조⑤)
- **(이의신청)** 보조사업자 등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 의견조회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37조)
- **(수납)** 제재부가금 납부를 통지받은 보조사업자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시행령 14조의2⑥)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납부
 -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중앙관서의 장에 통보(시행령 14조의2⑦)

- (체납에 따른 가산금) 중앙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의 체납 시 체납기간에 대해 체납금액의 5/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법 33조의2③)

1.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금액의 1/100
2.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금액의 2/100
3.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후 납부하는 경우 : 매월 경과마다 1/100 추가가산

- 중앙관서의 장은 미납된 제재부가금·가산금에 대해 강제징수 할 수 있음(법 33조의3)

- (적용 일자)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규정의 시행일인 '16.4.29. 이후에 발생한 위반사실을 이유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

- '16.4.29. 이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적용 불가

<위반행위 발생 시점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예시>

- 교부결정일자 '16.2.24., 반납결정일자 '17.1.3., 위반행위일자 '16.4.28. 이전 → 제재부가금 부과 불가
- 교부결정일자 '16.4.19., 반납결정일자 '17.1.3., 위반행위일자 '16.6.2. →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

⑤ 강제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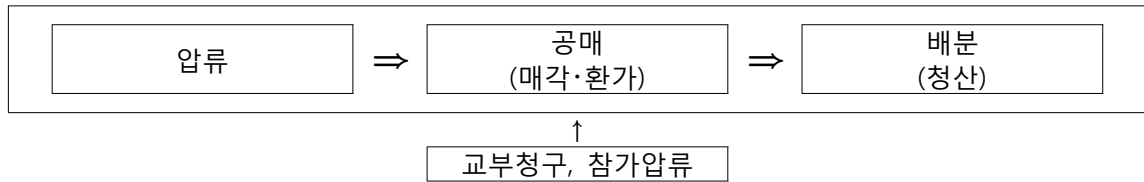
- (강제징수) 미납된 보조금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이 있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법」에 따라 징수(법 33조의3)

*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체납처분 절차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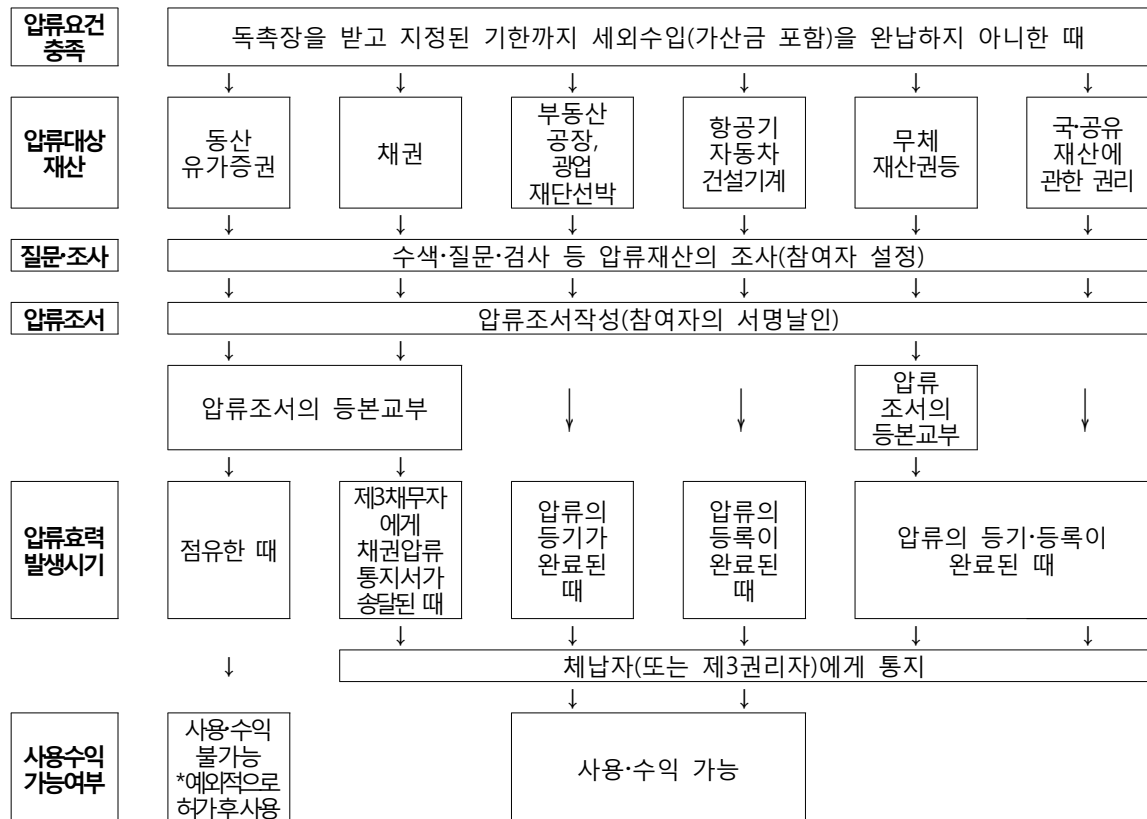
-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

※ (참고)국세채납처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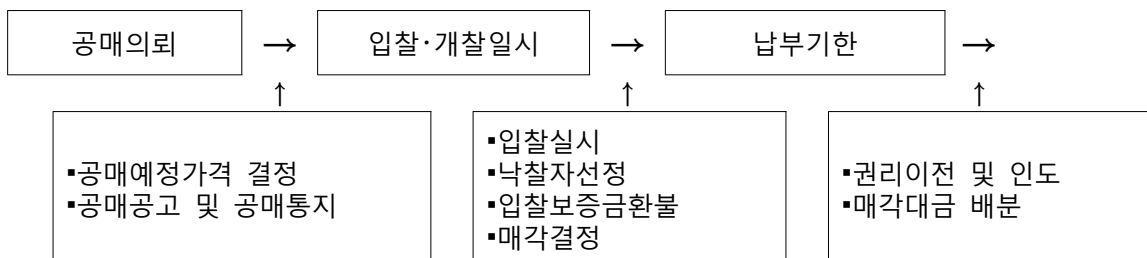
○ 국세채납처분의 절차 개요



○ (압류) 채납자의 특정재산에 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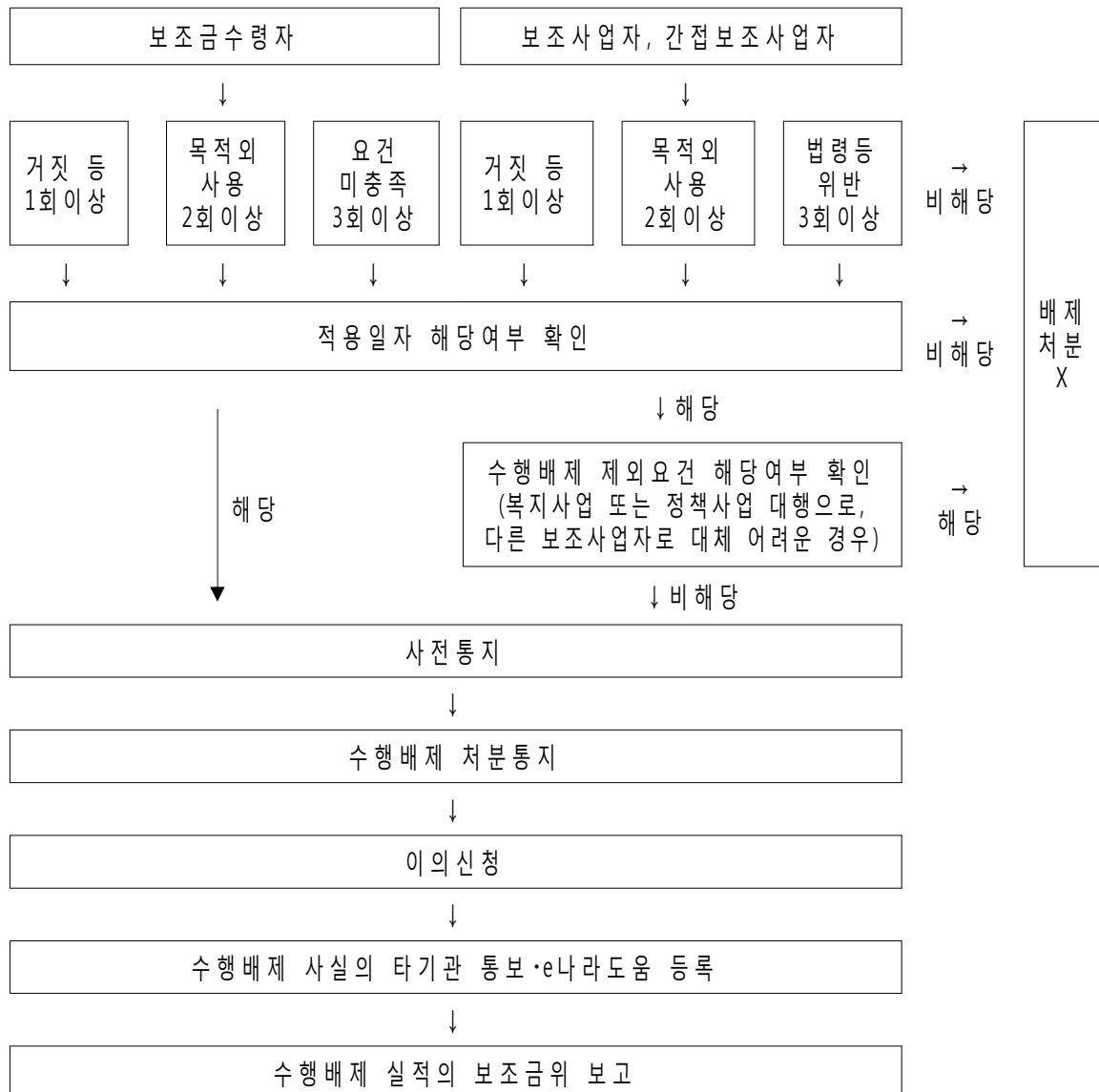
○ (공매) 국세징수법 제62조제5항은 공매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환가) 압류재산의 환가(換價)는 징세관서가 압류한 채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채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정처분

- (청산)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채납처분 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
- (교부청구) 채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징세기관의 공매절차 또는 그 외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환가대금에서 채납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당을 구하는 행위
- (참가압류)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

⑥ 보조사업 수행 배제



- (배제 요건)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등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해야 함(법 31조의2①②)

부정수급자 수행 배제 기준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취소 회수
가. 보조금 반환 대상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1회 이상
	2) 보조금, 간접교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2회 이상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3회 이상
나. 보조금 반환 대상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 반환 명령	1회 이상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반환 명령	2회 이상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환 명령	3회 이상

- 다만, 해당 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음
- 보조금 반환사유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면서 그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수행배제를 위한 위반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안 제출 예정

* 시행령 별표5(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1조의2제4항에서는 수행배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미비하여 개정 필요

- (배제처분 사전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절차 개시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관련 자료제출 등 소명 기회(사실확인서, 진술서 등)를 주어야 함(지침 43조②)
 - * 통지받은 것을 확인한 후 15일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예고한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절차법 27조④)
 -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 가능
- (절차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 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지침 43조③)
- (배제처분 통지)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시에는 그 내용을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배제사실의 타 기관 통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통보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수급을 제한해야 함(법 31조의2③)
 - 중앙관서의 장은 수행배제 사실의 통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e나라도움에 등록(시행령 13조의3①)

1. 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보조사업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명·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제한 사실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시행령 13조의3②)
- 중앙관서의 장은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대상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함(시행령 13조의3③)

○ (이의신청) 보조사업자 등은 수행배제 및 수급 제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 의견조회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37조)

○ (적용 일자) 수행배제 규정의 시행일인 '16.4.29 이후 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

- '16.4.29 이전에 교부취소 및 반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행배제 불가
- 목적외사용·법령위반·요건미충족 등 2회 이상의 위반행위 시 수행배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16.4.29 이후의 위반행위만 고려

<교부취소 및 반환명령 시점에 따른 수행배제 처분 예시>

◇ 1회 적발시 수행배제가 가능한 경우(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 교부결정일자 '15.6.24, 반납결정일자 '16.3.3, 위반행위일자 '15.10.12 → 보조사업 수행배제 불가
- 교부결정일자 '15.6.24, 반납결정일자 '16.5.3, 위반행위일자 '15.10.12 →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

◇ 2회 이상 적발시 수행배제가 가능한 경우(목적외사용·법령위반·요건미충족 등)

- 목적외사용 2회 적발, 반납결정일자 '16.2.3, '16.7.14 → 수행배제 불가
- 목적외사용 2회 적발, 반납결정일자 '16.5.6, '16.9.22 → 수행배제 가능

7 부정수급심의위원회

○ (구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지침 44조①③)

-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중앙관서에서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 중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
-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동 위원회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

○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지침 44조②)

1.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안전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출석요청 및 의뢰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 등의 요청 가능(지침 44조④)

○ (개의 및 의결)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지침 44조⑤)

○ (세부 운영사항)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함(지침 44조⑥)

-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위원의 정족수, 민간위원의 포함 여부, 위원회 개최 주기, 심의·자문사항 구체화 등

<구체적 운영사항 규정 사례>

◇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구체화

- 심의·의결 : 포상금 지급요건·지급액·지급시기·환수에 관한 사항 등
- 자문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부과율에 관한 사항 등

◇ 심의위원회 구성 구체화

- 위원 재적인원 설정(위원장 포함 10명 내외)
-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설정
 - 위원장 : 감사관
 - 당연직 위원 : ○○과장, △△과장, □□조사담당관
 - 민간위원 : 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 그 밖의 해당분야 전문가
 - 간사 : □□조사담당관 소속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1명
- 위촉직 위원 임기 설정(2년,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8 명단 공표

- (명단공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함(법 36조의2①, 시행령 17조의2①)

1.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2.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 내용
3.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4.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

- (공표 기간) 중앙관서의 장은 공표 사항을 1년간 게재하여야 함
(시행령 17조의2②)

- 다만, 공표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명단공표 내용 및 기간 사례>

○ 해당 양식에 따라 명단 등을 1년 간 공표 중('18.3.31.~'19.3.30.)

1. 부정수급자 정보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나이	
상호·법인 주소			
대표자 주소			
2. 주요 위반행위 및 내용			
'16.8~10월까지 프로그램 6회 강사비 총 48만원을 실제 강사로 활동하지 않은 자의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			
3. 행정처분 내역			
①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교부 취소 및 부정수급액(48만원) 전액 환수			
② 제재부가금 부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240만원(부정수급액의 500%)의 제재부가금 부과			

○ (공표 제외)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않은 다음의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음(법 36조의2③, 시행령 17조의2④)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표심의위원회)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에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법 36조의2②, 시행령 17조의3)

- 위원장(해당 중앙관서 차관 또는 부기관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 해당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3명 이내), 민간전문가(5명 이내)

-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공표사실 사전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공표심의위원회의 개최 전 공표대상자에게 공표 사항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법 36조의2④, 시행령 17조의2③)
- (공표 연기)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공표를 해야 함(법 36조의2⑤)
- (적용 일자)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규정의 시행일인 '16.4.29.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조사업자등이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받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

9] 수사의뢰 또는 고발

- (수사의뢰와 고발) 필요한 경우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음

- ◇ 수사의뢰와 고발의 구분 : 수사의뢰는 단순 수사를 요청하는 것에 그치나, 고발은 피신고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포함
 - 수사의뢰 : 부정수급 관련 처분 전 위반행위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의 적발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 고발 : 부정수급 확정 및 처분 완료 후 벌금 등 사법상 제재를 요구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 (수사 및 처벌 근거) 보조금법 벌칙규정 또는 개별법 벌칙규정

※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보조금법 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기혐의로 수사의뢰 또는 고발 고려 가능
 -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절차) 수사의뢰서 또는 고발장을 작성한 뒤 현장점검자료 등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문서로 의뢰
- (수사의뢰 또는 고발의 주체)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 등 (상위) 보조사업자

10 벌칙

- (벌칙)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거짓 신청의 경우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부과(법 40조, 41조)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 위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개별법상 별도의 벌칙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름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나. 채권(債券)

다. 물품

라. 상품권, 이용권(利用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청구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7.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부정청구 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租稅)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2.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3. 벌금·과료, 몰수·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7조의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중단, 정지 또는 중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8조의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9조의 제재부가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

④ 제12조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3조의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부정청구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5조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 제3항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가산금·체납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은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6조의 명단 공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23조제1항의 포상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

제6조(부정청구 등 금지)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부정이익 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 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 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 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④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수회에 걸쳐 부정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누적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3.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의 기준은 부정이익 등의 금액, 부정이익 등을 얻은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을 받거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 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부정이익 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의 실시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자(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재산 관계 공부(公簿) 등의 열람·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 등 환수처분,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제12조에 따른 가산금·채납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명단 공표) ① 행정청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정수익자(이하 “고액부정청구 등행위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고액부정청구 등행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

2. 제1호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 원 이상
- ② 행정청은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액부정청구 등행위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행정청에 고액부정청구 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④ 행정청은 명단 공표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
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액부정청구 등행위자의
명단 공표의 시기·방법·절차, 소명의 기간·방법·절차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부정청구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제17조(부정청구 등의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8조(신고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7조에 따른 신고

3. 신고 사항에 관한 조사·감사·수사 또는 소송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4. 신고한 사람에 대한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제19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법인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전직(轉職),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 등으로 인하여 인가·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가·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구를 한 자나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출석 요구 및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를 받거나 조회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구 또는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 결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한 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법인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조치의 요구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법인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2.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한 자,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③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한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등과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신고자등이 신고 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해당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補償金)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때 해당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한다.

1.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 등의 환수

2.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 부정수익자,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자,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준용규정) 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 청구 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8조제4항, 제70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부패행위”는 “부정청구 등”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제60조의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2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 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 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이행실태의 점검 등)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 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이행실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 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채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의 이행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은 부정청구 등의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25조 및 제26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3.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화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제1호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한 행정청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일부개정) 2001-09-29 조례 제 2810호

(일부개정) 2009-10-05 조례 제 3308호

(일부개정) 2013-02-20 조례 제 3678호 (전라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부칙)

(전부개정) 2013-07-26 조례 제 3736호

(전부개정) 2015-02-26 조례 제 3886호

(일부개정) 2017-09-28 조례 제 43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전라남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 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개정 2017. 9. 28.)
3.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2. 22. 전라남도 조례 4636호, 2018. 2.22일자공포, 중앙 행정기관 명칭 정비를 위한 「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요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교부결정)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8조(교부조건)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8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첨부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별도계정 설정)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22조(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성질의 경비
2.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

제23조(시·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보조율) ① 시·군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사업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정액 또는 전액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24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6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7조(정산검사)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6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8조(감독 등)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할 수 있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30조(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1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7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9. 28.)

제32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33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2. 전라남도 조례 4636호, 2018. 2.22일자공포, 중앙행정기관 명칭정비를 위한 「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 2. 22. 전라남도 조례 4636호, 2018.

2.22일자공포, 중앙행정기관 명칭 정비를 위한 「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

제34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35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조사업 감사 업무편람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전라남도지사

편집인 감사관 강효석
청렴지원관 이형만
청렴윤리팀장 김현철
컨설팅감사팀장 조대정
자체감사팀장 장광열
시군감사팀장 서형빈
기술감사팀장 임오중
보조금감사팀장 김형찬
공직조사팀장 이정준

원고정리 김홍기, 이부심, 정삼옥

발행처 전라남도 감사관실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TEL. (061) 286-2281 ~3
